

목 차

I. 연구목적	243
II. 청소년범죄의 원인	247
1.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논의들	247
1) 개인요인	247
2) 가정요인	250
3) 학교요인	253
4) 친구요인	256
5) 지역사회요인	258
2.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발론론적 시각	262
III.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대책 : 외국 연구들의 검토	266
1.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원인별 대책	266
1) 개인요인 대책	266
2) 가정요인 대책	268
3) 학교요인 대책	271
4) 친구요인 대책	273
5) 지역사회요인 대책	275
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 대책 :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281
1)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281
2) 위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284
3) 다이버전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286

4) 지역사회내 처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287
5) 시설내 처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290

IV.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다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전략

: 새로운 전략의 모색	292
--------------------	-----

1.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의 안	292
1) 다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 대처	292
2) 관련 기관과 역할	298
3) 종합적 연계 방안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단위	302
4) 종합적 연계 방안에 있어서 운영의 주체	306
2.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의 주요 내용	310
1) 지역차원의 범죄기회 차단과 환경개선	310
2) 부모대상의 교육	312
3) 학교강좌의 개설	313
4) 학업증진	314
5) 위험청소년의 발견과 상담	315
6)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강화	317
7) 소년사건처리의 절차와 사법기관 운영의 개선	318
8)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321
9)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활성화	325

V.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에 있어

경찰역할의 모색	327
----------------	-----

1. 청소년범죄와 종합적 연계 전략에 있어 경찰의 역할	328
1) 청소년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328
2)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현재의 경찰활동	330
3)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전략에 비추어 본 경찰의 역할	335

2. 향후 경찰의 나아가야 할 방향	339
1) 파출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제해결과 치안협력화	339
2) 지역의 조직화와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342
3) 유해업소의 단속강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모색 등 유익한 환경의 조성	344
4) 청소년선도에 있어 팀운영의 연계 체계의 강화	345
5) 청소년과의 관계 개선과 자매결연, 범죄예방활동에의 청소년 활용	347
6) 청소년범죄자의 다이버전 확대와 수사권 독립	348
 VI. 맺음말	 351
 참 고 문 헌	 354

표 차 례

<표 1>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들	261
<표 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처	297
<표 3> 범죄수준과 위험성에 따른 처우 결정	320

I. 연구목적

청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도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이다. 그렇지만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는 청소년층이 전체범죄의 반 이상을 저지르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폭력범죄의 경우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징후는 매우 심각하다. 학원폭력의 예를 들더라도 청소년폭력문제는 더 이상 소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그 양상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폭화되고 심각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 대인범죄가 많아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범죄로 인해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성인범죄자가 대부분 청소년범죄자 출신인 것을 보면 청소년범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요 정책사항의 하나가 된다. 더욱이 청소년범죄자의 연령층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은 사법기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범죄 대책은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범죄가 일어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선도를 하고, 교정처우를 할 것인지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렇지만 사후대처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낙인의 오명을 부여할 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귀와 사회재통합을 위한 조치로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내 처우가 확대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의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많은 청소년범죄자들은 다시 재범을 하는 등 기존의 사후대책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교정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부족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 프로그램의 강구와 실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로 많은 청소년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된다 해도 사후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청소년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생산되고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 이외에도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하여 어렸을 때 문제행동이나 범죄징후를 보였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심각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되고 있어, 사전예방, 특히 어려서의 조기예방과 즉각적인 개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원인에 근거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요소의 치유 없이는 그들의 사회복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 이외의 기관, 예컨대 가정, 학교,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비공식적 부분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예방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청소년범죄자들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대처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여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계적인 종합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대처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근거하여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처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같은 가정환경의 문제에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환경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그들을 처벌하거나 혹은 교정, 성향치료만에 주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하나의 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에 있다. 즉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에 복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요 원인을 발견하고 그 복합적 원인에 근거하여 위험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해

결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범죄의 대처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문제아이에 대한 조기개입, 그리고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사후대처를 통한 재범예방의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모두가 잠재적으로 범죄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징후가 있는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가 있기 전에 이들을 위한 어떠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를 이미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의 노력이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자들은 이를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범죄의 대처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간과될 수 없다.

셋째,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는 주로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청소년범죄자의 성향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학교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이 비행친구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 개인의 예방 혹은 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 주로 주목했다. 그렇지만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개인초점의 미시적 접근 이외에 거시 환경적 요소에도 주목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렇듯 청소년범죄의 대책에 있어서는 문제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개인대처의 노력 이외에 지역사회와 같은 거시 환경적 요소에도 주목하는 종합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사법기관 이외에 가정, 학교,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기업,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청소년문제에 관계하는 공식 및 비공식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후적 대처에서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는 사법기관 이외에 다양한 비공식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더욱이 사후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내 처우와 같은 대처가 확대되고 있어 비공식적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는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만이 관여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기관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연계되어 청소년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종합적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즉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원인들에 대처하는데 있어 여러 기관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행정구역상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계체계가 청소년범죄의 사전예방과 사후예방에 있어 각각 어떻게 운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논의들을 토대로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까지의 논의들을 수용 혹은 보완해 가면서 하나의 대안적인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 속에서 경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청소년 개인에게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여러 타 기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 속에서 주요 경찰활동은 무엇이며,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청소년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에서 시행되어 왔던 다양한 대처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 논의들을 기초로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며, 종합적 연계방안 내에서의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연계전략 속에서 지역사회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뤄보기로 한다.

II. 청소년범죄의 원인

1.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논의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요인

청소년범죄자들의 내적 개인특성으로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다. 여러 요인들 중 충동적 성향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되어져 왔다. 충동적 성향은 심사숙고 없이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고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장차 미래에 있을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Moffitt, 1993; 조은경, 1997; 심응철, 1999). 실제로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흥분하거나 화가 치밀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나 재미 삼아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청소년범죄는 대체로 자신의 순간적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크게 기인한다.

충동적 성향은 높은 활동수준이나 주의력 부족의 경향과도 연관이 있다. 활동수준이 높고 또한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문제행동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고 있는데(Moffitt, 1990a), 소위 ‘높은 활동수준의 충동적 주의력 부족(hyperactivity-impulsivity-attention deficit(HIV))’ 경향이 높은 아이들이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듯이, 충동적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침착하지 못해 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논의된다. 이처럼 충동적 성향은 높은 활동수준과 주의력 부족의 경향과 함께 청소년범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또한 연관되는 개인특성은 감흥추구(sensation seeking)성향이다. 감흥추구자들은 평상시 쉽게 따분해 하고 무언가 자극적인 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자로, 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외부의 강한 자극을 탐색하고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모험을 즐기기 좋아하고 또한 충동적이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White et al., 1985; 이성식, 2000). 감흥추구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에 충동성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충동성의 한 요소인 모험성과도 큰 관련이 있는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그 동안 생물학 혹은 생리학자들은 뇌 신경계 기능의 손상이나 학습능력 부족, 그리고 낮은 지능이 청소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왔다. 즉 유전에 의한 혹은 출산 시 적은 몸무게로 태어나거나, 또는 외부에 의한 뇌 손상으로 뇌 신경계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차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그 이유도 그러한 아이들은 학업능력이 부족해 차후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Hirschi and Hindelang, 1977)이외에도 그들은 충동적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그러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결과될 차후의 일을 생각하는 사고능력이 부족하여 순간만족과 욕구대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충동성은 순간만족을 추구하고 쉽게 흥분하여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기질로 이해되지만, 그것은 자기통제력의 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지능력의 부족과도 연관된다고 주장된다. 즉 청소년범죄자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아이들로 간주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지이론가들은 청소년범죄의 다양한 성향요인들 중 청소년들의 인지능력의 결함, 즉 생각의 부족이나 잘못된 사고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은, 특히 폭력범죄 청소년들의 경우 상당수가 충동적이고,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생길 차후의 결과를

생각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인지능력의 결함자로 규정된다(Moffitt, 1999b). 즉 청소년범죄자들은 행동이전에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으며, 또한 비록 생각을 하더라도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하는 아이들로 묘사된다. 예컨대 대인관계의 문제해결능력에서 보면 청소년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의도나 관점을 잘못 이해하고, 대인갈등상황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며, 문제상황에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화나 흥분이 폭력범죄에 있어 중요한 동기이자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인지이론가들은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상황인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상대의 언행을 더욱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각할 경우 화가 치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갈등해결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기술능력 등 합리적 인지능력의 여부가 청소년범죄, 특히 폭력범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Dodge, 1993). 그리고 이러한 인지능력은 충동성과의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인지이론가들은 역할담당능력의 개인차도 청소년범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역할담당능력은 자신보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인갈등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상태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이해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어 왔다. 감정이입의 결핍도 이와 연관되는 주요 요인인데, 이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폭력의 경우 감정이입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피해당사자의 고통을 생각지 못하는 데서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

아울러 자신 혹은 사회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나 신념 또한 청소년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거나, 또한 사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범죄나 남을 해치는 행동이 크게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1) 그 동안 심리학자들은 청소년범죄와 연관되는 성격의 측면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왔다. 그 중 반사회적 성격(antisocial personality) 혹은 정신병질적 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은 청소년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그 특징도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병질적 성격에는 이기성, 쉽게 지루해 하는 성격,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화기질, 미래계획의 부족, 감정이입의 부족, 무책임성 혹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습성 등이 그 주요 구성요소가 되며(Hare, 1991), 이는 청소년범죄의 주요 내적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은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잘못되고 왜곡된 사고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인지이론가들에 의해 다뤄지는 주요 요소의 하나이다.

2) 가정요인

가정은 청소년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다뤄진다. 즉 청소년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달리 가정환경에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 등 구조적 가정환경 요인과, 부모간의 불화,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과 유대 약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감독 부족, 잘못된 훈육방법과 같은 가정기능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86; Smith and Stern, 1997). 그 중에서도 가정기능적 요인은 청소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부모의 교육과 직업수준이 낮거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를 더욱 저지른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며,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다소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큰 설명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일치된 의견이다. 중산층 혹은 상류층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으며,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한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질 경우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이혼을 안 했지만 부모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구조적 가정환경요인보다는 부모의 애정과 같은 가정기능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정의 기능적 요인 중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 등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적 유대관계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²⁾ 즉 부모가 자식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많은 시

2)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성장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천적인 이유에서건 다른 이유로 문제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러한 행동이 방치될 경우 모두가 위험청소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험청소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

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또한 자식도 부모에 대해 애정을 느끼고 부모와 대화를 하는 등 서로 믿음과 유대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부족 속에 자란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쉽게 범죄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부모와 갈등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긴장을 느끼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감독은 같은 이유로 부모의 애정과 함께 청소년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뤄져 왔다. 즉 자식이 밖에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적절히 통제하고 관심을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져 왔다(Wells and Rankin, 1988). 부모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청소년들의 행동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며 외부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오히려 부모의 애정보다도 감독의 측면은 가정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김준호, 김선애, 1996). 물론 지나친 통제와 억압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방관적인 태도나 혹은 지나친 통제보다는 적절한 감독이 청소년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단순히 감독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애정 어린 유대와 함께 이루어질 때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보호요소가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의 훈육요소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나치게 강압적이면서도 가혹한 체벌과 폭력, 그리고 비일관된 양육은 또한 청소년에게 위험요소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나친 체벌 혹은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자연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폭력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또한 체벌과 학대는 부모와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며, 그러한 연유로 가출을 하게 된 아이들은 쉽게 범죄에 빠져든다고 보고되고 있다(Widom, 1989; Smith and Thornberry, 1995; 이성식, 2001a). 체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의 애정은 중요해, 애정 어리고 교육적인 사랑의 때는 청소년범죄

이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신분석이론을 따르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부모의 애정과 행동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문제청소년으로 발전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등 그 차후 경로는 달라진다고 하여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와 무관하지만, 애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관성 없는 가혹한 체벌과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처럼 가정요인 중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 부모의 감독과 관심, 그리고 부모의 체벌과 폭력은 청소년범죄와 연관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조적 가정환경요인도 결국은 이러한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하층의 빈곤가정, 결손가정,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지 못하고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체벌 등 부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예컨대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로 혼자서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 직장에 나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식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적절한 감독을 못 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며, 두 부모가 해야 할 자녀양육을 혼자서 아이들의 행동통제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로 매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빈곤, 결손가정의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애정과 감독 등 가정의 기능적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어 그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정의 기능적 요인은 더욱이 청소년들 개인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충동성, 감흥추구성향, 인지능력의 결함,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부정적 자아, 범죄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등 청소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소들도 결국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물론 일부 생물,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성향이 유전 혹은 신경체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많은 논의에서는 그러한 성향들이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크게 비롯되며, 특히 가정은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논의에서는 어려서 형성되는 충동적 성향 혹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향은 부모의 애정과 감독의 부족, 잘못된 훈육에 의해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지형성의 사회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이론가들도 주장하기를 부모로부터 애정 없이 자라거나 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한 아이들은 기억 속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정보가 크게 자리잡게 되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대인갈등상황에 있는 상대방의 여러 단서 중 적대적인 단서에 특히 주목하여 상대방에게 더욱 흥분하고 공격적이 된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아이들은 부모가 쉽게 흥분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밖에서도 문제해결을 적절치 못하게 해결하게 되며, 또한 폭력을 쉽게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 폭력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Dodge, 1993).

이처럼 가정요인은 청소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부정적 환경요인은 청소년들의 불만과 긴장을 야기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를 야기하고, 비행친구와 사귀게 하는 그 근본적인 발단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3) 학교요인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의 여러 경험들은 또한 청소년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정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의 역할을 학교가 많은 부분 대신하게 되었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등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 중 청소년범죄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은 학업실패 혹은 학교성적이다. 즉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은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Hawkins et al., 1992). 학업성적은 청소년들이 인습적인 목표의 달성, 즉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업에 실패한 아이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이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의 가치를 거부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학교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중퇴를 하거나 급기야는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업실패의 원인으로 가정환경을 강조했다. 예컨대 하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서부터 학업능력을 키우지 못해 학교성적이 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적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또한 선천적이건 가정환경에 의한 지능이 낮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생물 혹은 심리학자들은 앞서 제시했듯이 지능과 같은 개인 속성의 요인을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Hirschi와 Gottfredson(1977)의 주장에서처럼 그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학교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이 그 주요 이유인 것으로 밝혀지듯이,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는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이 된다.

학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인한 좌절감이외에 주위의 부정적 반응에 의해 비행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도 학교성적에 의해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학업실패는 가정에서의 적응에 또한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³⁾ 또한 학업실패는 선생이나 친구로부터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거나 학교생활의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주어 소외감을 낳거나 자괴심을 낮춰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학교와 관련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학교 혹은 학교선생에 대해 갖는 애착과 학교공부에 대해 쏟는 관여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학교에 가기를 좋아하고 학교선생에 애착을 느끼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공부에 많은 정열과 노력, 시간을 쏟는 아이들은 인습사회와의 유대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에 빠져들 위험이 크게 적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청소년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된다(Hawkins and Lishner, 1987). 오히려 이들 요인들은 학업성적과 청소년범죄 사이에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한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선생에 크게 애착을 못 느끼며, 공부에 정진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어 청소년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업성적과 아울러 학교 및 학교선생에 대해 갖는 애착, 학교공부에 대한 관여와 노력은 청소년범죄와 연관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되며(김준호, 노성호, 1993), 비록 학업성적이 부진하더라도 학교에 애착을 갖거나 공부에 전념하는 아이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된다.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문

3) 특히 중산층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공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아 그러한 가정에서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은 부모의 공부압력 때문에 크게 긴장을 경험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주장된다(김준호, 1990; 김준호, 이성식, 1997).

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데에는 학교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학업과 관련된 요인 이외에 학교환경 요인도 주요 요인으로 다뤄졌다. 학교환경의 요인으로는 학교의 규모, 학교선생과 학생들간의 관계, 학교의 범죄수준, 학교에서의 체벌, 학교에서의 능력별 학습편성체계,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교과과정, 학교운영사항 등이 있다.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나 학교선생과 학생들의 관계가 덜 친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일일이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규모가 크거나 과밀학교의 환경에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은 학교에 애착을 못 느끼고 자칫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학교규모와 청소년범죄는 비록 강한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범죄와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수준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범죄를 쉽게 용인하게 되고 범죄가치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또한 선생이 학생들에게 체벌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다닐 경우 학생들은 학교에 만족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되고 그것을 쉽게 용인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는 학습진행상의 효과 때문에 우열반 등의 능력별 편성을 하여 학생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학업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하여 자긍심을 잃게 되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낮아지게 되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Wistrowski et al., 1982).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혹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흥미를 크게 잃게 하여 학교나 학업에 애착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결정에 수동적으로만 따르게 되고 책임감 없이 소외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적응의 실패를 낳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보다는 지위비행에 보다 연관되며 또한 청소년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기보다는 비행친구와의 모임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 즉 학교에 부적

응한 아이들은 인습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친구들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해서 청소년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

4) 친구요인

그 동안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왔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비행친구와 어울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Johnson, 1979; Elliott et al., 1985).

차별접촉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에 우호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아이들이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그러한 태도와 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다뤄왔다. 비행친구의 가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 이외에도 주위의 비행친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에 의해서도 범죄는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위에 있는 친구의 범죄가 처벌 없이 긍정적 결과가 있었을 때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는 더욱 많아진다.

청소년범죄는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주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주장도 있었다. 대부분의 범죄는 단독범죄보다는 적어도 2-3인이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범죄는 친구의 유혹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 혹은 집단심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행친구와 집단으로 어울리다 보면 친구의 제의에 거절 못하고 급작스럽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범죄를 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심리에 의해, 혹은 친구의 압력에, 친구의 기대에 부응하고 친구에게 소심하고 비겁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집단역학 과정의 연유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가 반드시 범죄우호적 가치를 학습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이 범죄집단이나 불량서클, 혹은 폭력하부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하다. 실제로 소수의 이러한 청소년들이 폭력범죄의 상당부분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되는데, 폭력조직에 가입될 경우 범죄에 우호적이고 더욱 난폭해질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범죄는 생계수단이 되어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명령에 따르며 직업적으로 가

담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비행친구와 사귀는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예컨대 부모, 학교 등 사회와의 유대를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던 사회통제이론가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애정적 결속, 그리고 학교적응 여하가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또한 그러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도 사귀게 되는 것이지 비행친구와 사귀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유대약화로 범죄를 하다가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입장도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그렇지만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것은 범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중도적인 입장이 최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Thornberry, 1987; Elliott and Menard, 1996; Matsueda and Anderson, 1998). 또한 가정에서 부적절한 양육으로 범죄를 시작하면서 비행친구들과 사귀게 되고 비행친구와 어울림으로써 범죄의 경향은 더욱 증폭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Patterson et al., 1989; Moffitt, 1993). 국내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등 사소한 지위비행을 하다가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고 비행친구와 사귀게 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범죄집단에 소속된 아이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로 여겨진다. 오히려 학자들은 어떠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가정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는 그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충동적이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친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는 논의도 있었다. 평소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이들도 비행친구와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가정,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사소한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주위로부터 낙인을 찍히게 되고 냉대를 받으며 사회에 더 이상 적응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고자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범죄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된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도 또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어, 문제아이들이 많은 해체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귀는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Cattarello, 2000).

그러한 점에서 또한 아이들의 학교환경도 중요한데, 문제아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구성원인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비행친구와 사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지역사회요인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있어 최근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문제는 개인성향, 가정, 학교의 적응 문제, 비행친구와의 접촉 이외에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거주지역, 동네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Shaw와 McKay가 제시했던 사회해체이론이 최근 큰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회해체이론가들은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결속력, 통합도가 높고 행동기준이 있어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적 장치가 있을 경우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지만, 그러한 통합력과 통제적 기제가 상실되어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점에서 도심에 있는 극히 빈곤하고, 이혼율이 높으며, 이주율이 높고 번잡하고, 지역구성원들이 이질적이어서 지역주민들간의 결속력과 유대가 크게 와해되어 있는 해체된 지역에서 범죄율은 높다는 것이 주장되어 왔다(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Warner and Rountree, 1997). 사회해체이론은 개인보다는 지역사회간의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시이론이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거시 지역환경적 요소가 청소년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빈곤수준이나 이혼율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주율, 인구규모 등도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간의 유대나 결속력이 약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적절히 감시, 통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반경 내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웃간에 친밀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서로가 잘 알고 지내 동네사람들이 이웃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인 양 적절히 돌보아 주기도 하고, 행동을 적절히 감독, 통제하며,

또한 청소년들도 잘 알고 지내는 이웃어른의 눈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해체된 지역의 청소년들은 이웃으로부터 행동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된다. 즉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빈곤한 해체된 지역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화의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즉 해체된 지역은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문제를 야기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Elliott et al., 1996; Cattarello, 2000). 해체된 지역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적절히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웃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 잘못 양육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대체로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러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학교적응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불량배나 문제아들이 통제 받지 않고 거리에서 크게 눈에 띄게 되는데, 이처럼 그 지역의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접촉하거나 어울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청소년범죄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해체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청소년들에게 하위문화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지역이 된다. 즉 그러한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인습적인 가치가 자리잡기보다는 범죄우호적인 가치가 팽배하게되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은 규범의식이 약화되고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지역내에 건전한 여가시설이 없이 향락업소 등 유해업소가 많이 있게 될 경우 이는 청소년들의 가치를 혼란시키고 비공식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범죄학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향락업소가 주변에 인접해 있게 될 때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의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면서 비행친구와 어울리게도 되고, 혹은 유해업소에 출입하다가 유흥비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도 저지르게도 된다. 이처럼 지역의 유해환경은 청소년범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oncek and Meier, 1991; Peterson et al., 2000; 김문조, 이성식, 1994; 김준호, 박정선, 1996).

한편 범죄기회이론에 따르면 범죄기회가 용이한 상황에서 범죄가 쉽게 발생하며, 따라서 범죄기회의 여건이 범죄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Cohen and Felson,

1979). 범죄기회이론가들은 범죄자의 개인성향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범죄 발생의 여건과 기회상황에 주목했는데, 지역수준의 기회여건은 특히 강조되어 범죄기회가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범죄기회가 용이한 지역에서는 범죄발생이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초기의 대표이론가인 Jeffery와 Newman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여건을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강조하여, 이후 연구들에서도 지역내 거리설계나 건축물 형태, 조명밝기 등이 범죄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고(Greenberg et al., 1982; Taylor and Gottfredson, 1986; 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3), 또한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교통량이 많은 번잡한 상가, 유흥지역에서 범죄발생 기회가 높으며, 거리에 쓰레기나 낙서가 방치되는 등 무질서한 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범죄발생 가능성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kogan, 1990; Taylor, 1996). 한편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약한 지역에서도 범죄기회의 여건을 제공해 범죄발생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Greenberg et al., 1985).

이러한 지역들은 범죄기회의 여건의 차이 때문에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간의 유대가 약하고 비공식적 통제력이 낮음으로 해서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Wilson과 Kelling(1982)은 깨어진 창(broken window)이론에서 지역의 무질서한 징후들을 범죄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는데, 지역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은 증가하고 이주율은 높게 되면서 지역전체의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지역내 범죄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보다 최근의 범죄기회이론의 논의는 이처럼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조하여 사회해체이론의 논의와 통합되어 지역차원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주목하기도 했는데(Bursik and Grasmick, 1993; Rosenbaum et al., 1998), 이러한 지역차원의 논의들이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는 크게 미약하지만, 이는 청소년범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들

개인요인	충동성 감흥추구성향, 모험성 지능 문제해결, 인지능력 역할담당, 감정이입 부정적 자아 반사회적, 범죄우호적 태도
가정요인	경제수준 부모의 이혼 부모간의 불화, 갈등 부모의 체벌, 학대 부모의 애정 부모의 감독
학교요인	학업성적 학교, 학교선생에 대한 애착 학교공부관여 학교의 규모 학교선생과 학생들간의 관계 학교의 범죄수준 학교에서의 체벌 학교에서의 능력별 학습편성체계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교과과정 학교운영사항
친구요인	비행친구접촉 비행친구압력 범죄집단가입
지역사회요인	지역빈곤 지역유대와 결속력 지역범죄수준 지역유해환경 지역물리적 환경 지역무질서 지역주민감시

2.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발론론적 시각

청소년범죄 연구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범죄를 종단적 시각에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고등학교 당시의 개인성향, 가정환경, 학교생활, 친구관계를 묻고 어떠한 요소가 청소년범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에 주목했었다면, 최근에는 어려서부터의 그러한 요소들의 작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어려서부터의 발달과정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어릴 때 경험은 어떠한가, 초기의 문제행동이나 범죄는 언제 시작하였는지, 그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이유로 범죄를 계속하는지 혹은 중단하는지의 생애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를 접근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서의 아동 혹은 소년기때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범죄의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은 커서 범죄를 시작한 아이들보다도 청소년기에 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범죄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동안의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초기의 범죄연령이 청소년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왔듯이(Loeber and LeBlanc, 1990; Hawkins et al., 1998), 어릴 때의 경험은 청소년범죄에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어려서의 충동성 기질이나 그 밖의 다른 성향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범죄와 연관되는 제반 성향들은 어려서 형성되는데,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될 경우 어려서부터 문제행동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충동성과 주의산만의 높은 활동수준 등이 선천적인 생리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양육과정에 의해 또한 크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서의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즉 가정은 청소년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도 사회발론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려서 특히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그들의 일반이론에서 어려서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범죄가 순간만족과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러한 점에서 순간만족과 충동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즉 자기통제력의 성향 여하가 청소년범죄 및 성인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성향은 어려서 형성되고,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아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성향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무계획적 생활습관에 관여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제재 없이 방치하거나, 혹은 애정 없이 자식을 대할 경우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커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Moffitt(1993)의 논의에서도 언급되어, 뇌 신경계의 이상이 있거나 혹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적절한 훈육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은 언어,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 되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다. Moffitt는 청소년범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 하나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소위 초기진입자들로, 이들은 생애지속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어려서는 문제징후나 문제행동이 없었고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한 후기진입자들인데, 이들은 청소년기에만 범죄를 저지르다가 중단하는 한시적인 청소년범죄자들이라고 했다. 위험집단인 전자의 경우에 있어 심리학자인 Moffitt는 어려서의 성향을 특히 강조했는데, 그러한 성향은 생물학적인 이유 이외에 가정에 의해서도 크게 비롯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있어 가정의 역할을 또한 강조했다.

이처럼 가정요인은 어린 시기에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 동안의 연구에서 가정의 기능적 요소보다 부모의 이혼 여하는 청소년범죄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부모가 청소년 성장기에 이혼한 경우보다 어릴 때 이혼한 아이들의 경우 범죄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아이들에게 더욱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보다 어려서의 부모의 관심, 애정, 훈육방식은 청소년범죄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된다.

그렇지만 어려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성장기의 다른 환경적 요소와 관계없이 청소년기의 범죄에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예컨대 Gottfredson과 Hirschi는 어려서 가정의 영향에 의해 일정 충동적 성향이 형성되게 되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청소년성장기의 가정, 학교, 친구의 영향과 관계없이 어려서 형성된 성향과 문제행동이 청소년범죄,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의 범죄도 설명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사회발전문자들은 어려서 가정의 영향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영향으로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러한 이유에 의해 청소년시기에 범죄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발전문자들은 비행의 지속적인 측면 이외에도 범죄의 발전과정, 즉 범죄가 중단되거나 혹은 범죄의 경향이 증폭되고, 또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에 따르면 어려서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이 초기범죄의 단서를 제공하지만 성장기 때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다. 성장기 때의 환경은 범죄경향을 증폭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면 비록 어릴 때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발전문자들은 범죄의 증폭 또는 중단의 이유도 설명하려고 했다.

Sampson과 Laub(1993)는 그 대표적 이론가로 청소년범죄의 최초 발단은 어려서의 경험에 있지만, 결국 청소년범죄는 청소년기의 가정, 학교 등의 사회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어렸을 때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들이 성장기에 부정적 환경에 처할 경우 범죄경향은 더욱 증폭되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에 사회유대를 회복하거나 비행친구와 사귀지 않게 되는 경우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어려서의 경험 이외에 청소년기에서의 환경변화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학자들은 어려서의 가정에서의 경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룬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발전문자들에 따르면 어려서 가정에서 유대가 형성된 아이들은 유대가 지속되고 학교생활, 친구관계도 원만히 형성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는 지속되고, 또한 성장기에 학업의 부진을 겪게 되면서 점차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되어 청소년기에 위험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어려서는 가정이 중요하지만 커가면서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사귀었는가가 청소년범죄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회발전론자들은 지역사회요인을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을 청소년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빈곤하고 해체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은 성장기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문제를 야기해 차후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앞서 다루었듯이 지역사회요인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어린 시절에서의 지역사회의 특성보다는 청소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이나 범죄기회와 같은 상황적 요인을 강조했던 반면, 주로 개인수준의 요인에 관심을 보였던 사회발전이론가들은 이 부분에 소홀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대책 : 외국 연구들의 검토

1.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원인별 대처

청소년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설명된다. 즉 청소년범죄자들은 그들의 충동적 성향이나 인지적 결함 이외에도 가정, 학교, 비행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영향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Howell, 1995; Farrington, 1996; 엄명용, 1999). 이는 청소년범죄자만을 교정의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대책이 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가를 말해준다. 청소년범죄의 대처에는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향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그들의 환경의 요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주된 관심이 대상이 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청소년범죄자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 키워지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청소년들 이외에도 부모를 포함한 대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가정 이외에 학교, 비행친구, 지역사회 등의 요소가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방안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던 다양한 대책들을 보면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대책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요인 대처

정신분석학자들은 문제행동의 기반에는 내면의 정서상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개인치료에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상의 문제 그리고 내면의 갈등문제, 예컨대 아이들의 불안감, 우울감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정신분석치료에서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등 고도의 전문가가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내면의 갈등문제를 파악하고 그 갈등의 근원을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화되지 않아 치료방법으로 크게 선택되지는

않았고, 또한 이후 연구들에서도 그 효과가 크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Lipsey(1992)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는 메타분석에서 그 방법이 아이들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Weisz와 그 동료들의 연구(1987, 1995)에서는 정신치료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소 미약하며, 행동치료의 방법이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했다.

내담자 중심 치료(client-centered therapy)나 현실치료(reality therapy)는 정신분석 치료와 유사하면서도 치료과정에서 전문상담 치료자보다는 치료당사자인 아이들의 역할을 중시해 상담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의 욕구불만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려 했던 치료방법이었는데, 그 효과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Weisz와 동료들(1995)에 따르면 예컨대 내담자중심 치료는 여러 치료방법 중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청소년범죄자들은 내면의 정서상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보다는 보다 외부에 표출되는 성향, 예컨대 충동성이나 주의력 부족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되며, 그러한 성향은 내면의 치료보다는 행동치료를 의해서 보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행동치료가 문제청소년들의 치료에서 보다 주목받게 되었다.

행동치료는 치료과정에서 외부의 행동 변화에 치중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일정한 학습과정을 통해 고치려는 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보상과 벌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치료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잘 따르면 보상을 하여 그 행동을 격려하고 그렇지 못할 때 벌을 주도록 하는 토큰경제 방법은 대표적인 예이다. 혹은 치료당사자인 아이들과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하고 치료과정에서 보상과 벌의 규칙 등 계약을 맺어 행동을 바꾸려는 행동계약 방법도 사용된다. 또한 바람직한 행동모델을 정하고 그것을 관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거나 그 행동을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들의 치료에서 크게 호응을 받아 왔는데, 특히 행동치료의 방법이 인지상의 치료와 결부될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청소년범죄자들은 충동적이고 높은 활동성을 지니며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왔다. 따라서 그러한 성향들을 치료하기 위한 개인대처 전략이 그 동안 많이 시도되고 논의되어져 왔다. 이때 인지행동치료의 방법을 통해 충동

성과 화기질을 조절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인지능력을 키우려는 대처전략은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Ross와 동료들(1988)의 추론과 재사회화 프로그램(Reasoning and Rehabilitation Program)에서는 아이들의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바꾸고, 행동하기 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며, 대인갈등상황에서 협상기술과 문제해결의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와 영향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사회관점 혹은 역할담당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목했는데, 치료과정에서 보상과 벌, 모델링의 방법을 통해 치료하도록 했다.

그 중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어, Spivack과 Shure(1982)가 제시한 훈련방법은 이후 연구들에서도 청소년범죄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Hollin, 1990). 즉 문제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게 한 후 각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게 하여 그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훈련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대인갈등상황에서의 폭력행사는 상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상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에 의해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왜곡된 귀인경향을 바꾸려는 시도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Dodge, 1993). 아울러 화를 조절하기 위한 화조절 인지훈련도 문제아이들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는데,⁴⁾ 이처럼 인지행동치료방법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여러 개인 치료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ipsey, 1992; Hollin et al., 1995; Kazdin, 1997a).

2) 가정요인 대처

청소년범죄의 가정요인들로는 앞서 제시했듯이 부모의 관심과 감독의 부족, 애정의 결여와 부적절한 훈육, 체벌과 학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들을

4) 예를 들어 Goldstein과 동료들(1998)의 공격성대치 훈련 프로그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Program)에서는 10주 이상의 행동치료 방법을 통한 훈련으로, 화를 통제하기 위한 인지 전략을 가르치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해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혹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가정 전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한 점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 프로그램이나 혹은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부모가 자식을 적절히 양육한다면 청소년비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방법을 지도하려고 했던 부모관리훈련(parent management training) 프로그램은 크게 각광을 받았다. 오레곤 사회학습센터(Oregon Social Learning Center(OSLC))의 Patterson과 동료들(1982)에 의해 주도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지도하였는데,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자녀를 감독하며,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벌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부모의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개선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매를 들거나 폭언을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부모관리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문제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히 자녀양육방법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묻고 상담가가 부모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등 문제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별로 일정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적절한 사회학습기술을 가리키는 데 주목했다. 즉 잘할 때는 칭찬과 보상을 하여 격려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벌하며, 벌할 때에는 고함이나 체벌과 같은 방법보다 일정 권한을 박탈하거나 조용한 방이나 공간에 일정 시간동안 혼자 있게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 자녀와 함께 계약을 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보상과 벌을 일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러한 부모관리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실험연구에서 밝혀져 왔다(Dishion et al., 1992; Patterson et al., 1992). Weisz와 그 동료들(1995)은 그 동안의 연구들을 기초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부모관리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는 상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그 효과는 이미 성장한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때 더욱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azdin, 1997b).

부모가 개입되는 또 다른 가정프로그램으로는 가족치료가 있다. Alexander와 Parsons에 의해 제시된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는 그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는 청소년들의 가족성원들간의 상호행동과 의사소통방식 등을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가족치료에서도 부모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여기서는 전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에 주목한다. 이에 전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상호작용패턴을 변화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갖고 의사소통상에 협상하는 방법, 일정 규칙을 정하고 상호 강화의 방법을 습득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가족치료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개선 이외에 부모간의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가족치료의 방법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예컨대 Klein과 그 동료들(1977)은 소년법원에서 인계 받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가족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의사소통방식을 강화방식을 통해 격려하고 훈련시킨 결과, 그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족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던 가정의 청소년들 그리고 정신분석 혹은 내담자중심의 치료를 했던 청소년들보다 재범율이 극히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Shadish(1992)는 기존 연구들에서 있었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메타분석을 한 결과 가족치료가 가족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후 연구들에서도 그 청소년범죄 예방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Alexander, 1994; Tolan and Guerra, 1994; Tremblay and Craig, 1995).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상담가나 사회복지사가 문제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을 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를 훈련하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체계를 치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자녀를 학대하는 가정의 경우에서도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하여 대리부모나 보호시설 등에 위탁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를 치유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특히 부모훈련이나 가족치료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개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출산한 부모나 유아를 둔 부모, 특히 저소득층이나 미혼모의 가

정을 대상으로 지역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 부모를 교육시키고, 혹은 이미 문제징후가 나타난 가정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⁵⁾

3) 학교요인 대처

학교요인 대처는 학교요인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학업부진과 적응실패 이외에도 학교공부에 있어 노력부족, 학교선생과 학생들의 부적절한 관계, 그밖에 학교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주목해 왔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효율적인 학급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다.

시애틀 사회발전 연구(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Hawkins et al., 1988)는 그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학급관리, 협동적 학습전략, 그리고 상호작용적 수업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즉 적합한 학급활동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칭찬과 격려로 학급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아이들을 소집단으로 나눠 팀별로 보상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협동하여 규칙을 따르도록 유도하며, 또한 학과시간에는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선생이 검토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은 증가했고, 학교공부에 대한 관여도도 크게 증가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층 아이들의 범죄예방에 긍정적으로는 기여했지만 학생전체의 범죄예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관리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는 최근의 연구에서도(Battistich et al., 1996)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총체적 교육을 통한 긍정적 행동프로그램(Positive Action Through Holistic Education)(Gottfredson, 1986)은 학교관련 여러 요소들을 개선하려는 대표적인 전략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생들에게 학급규칙을 세우게 하고 효과적인 학급관리방법을 훈련시키게 하는 것 이외에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관리 및 상담서

5)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부모자녀 상호행동 훈련 프로그램(Parent-Child Interaction Training Program)(Strayhorn and Weidman, 1991)과 시라큐스 대학의 가족발전연구 프로그램(Syracus University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Lally et al., 1988)이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긍정적임이 밝혀지고 있다.

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학생들이 교과목 이외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자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으나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특히 위험청소년들의 경우,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큰 효과가 없었음이 보고되었다.

일반학생들 이외에 특별히 하층 등 위험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진급환경연구(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Felner et al., 1993)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특별 관리하고, 학업증진을 도우며, 학생상담 등이 실시되었는데, 실험집단의 학생은 학업성적도 올랐고, 또한 학교결석율도 적었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범죄나 문제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특별히 위험집단의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ottfredson(1990)의 도시전략을 통한 학생훈련(Student Training Through Urban Strategies)에서는 따로 법준수와 관련된 교과과정을 첨가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범죄는 줄어든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학급관리나 학업증진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학생들 개인의 범죄 관련 성향에 대처하려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경우 학교에서 일정 교과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문제해결능력 등의 인지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인인지문제해결 교과과정 프로그램(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Program)(Schure and Spivack, 1982)이나, 대안적 사고증진 전략(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Greenberg et al., 1995), 사회관계개입 교과과정 프로그램(Social Relation Intervention Program)(Lochman et al., 1993), 그리고 사회능력증진 프로그램(Soci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Weissberg et al., 1997)은 청소년들의 인지능력개발과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폭력을 막고자 갈등해결과 화조절을 위해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도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긍정적 청소년선택 훈련(Positive

Adolescents Choices Training) (Hammond and Yung, 1991), 생각 우선(Think First)의 화조절(Larson, 1992), 갈등해결(Dealing with Conflict)(Bretherton et al., 1993), 아동들의 두 번째 단계(Children's Second Step)(Grossman et al., 1997) 교과과정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였다. 여기서는 강의, 비디오 상영, 역할연기 등을 교과방법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마약이나 약물을 방지하기 위한 교과과정, 예컨대 약물남용거부교육(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등에서는 문제해결이나 자기통제능력 등을 포함한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Rosenbaum et al., 1994; Lindstorm, 1996).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약물의 유해성, 법 준수 등의 강의를 했던 프로그램으로, 이처럼 특별히 어떠한 분야, 예컨대 약물남용에서의 교과과정보다는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교과과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교재중심의 정보전달식의 강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경찰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한 교과진행보다는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Sherman, 1997).

아울러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경우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Lipsey, 1992). 즉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차원의 교과과정의 개설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연구들에서는 중학교이후의 프로그램보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개설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학생진급환경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위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중학생이상의 아이들이 연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4) 친구요인 대처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갯 혹은 범죄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범죄집단을 해체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Spergel, 1989). 시카고지역 연구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사업가의 할당 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였다. 이는 사회사

업가를 문제가 되는 지역에 보내 비행집단과 접촉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하여 그들에게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고 개인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사업가의 온건한 참여는 범죄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져 범죄집단내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원 충원이 있었으며, 사회사업가의 개입 후 범죄수준은 더욱 높아졌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Klein, 1971).

범죄집단들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처는 또 하나의 대처 전략이었다. 즉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집단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갱들을 체포하여 그들의 활동을 막는 전략이었다. 갱에 대한 지역사회 대처 프로그램(Community Resources against Street Hoodlums)이나 안전한 거리 프로그램(Operation Safe Streets)은 대표적인 경찰프로그램이었다(Klein, 1993). 그렇지만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전략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경찰에 의한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pergel, 1995; Rush, 1996). 강한 대처는 범죄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데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범죄집단이나 갱에 대한 대처에는 오히려 교화의 노력이라든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예컨대 경찰, 보호관찰관, 그리고 사회사업가가 협력하여 청소년범죄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면서, 아울러 그들에게 교육과 직업의 여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이외에 그들 혹은 그들 부모에게 상담과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때 다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Spergel, 1995).⁶⁾

그렇지만 이미 형성된 범죄집단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처전략은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예방의 측면에 있다고 주장된다.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정과

6) 이는 Spergel과 Grossman(1997)의 시카고에서 시행되었던 갱폭력 감소 프로그램(Gang Violence Reduction Program)에서도 그 효과가 지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또 다른 전략으로 아이들에게 사회 기술 등 인지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고도 주장된다(Tremblay et al., 1992). 인지능력과 사회기술이 부족한 아이들은 친구의 유혹에 혹은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과 휩쓸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들에게 친구의 압력을 거절하는 방법, 예컨대 자기주장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주요 전략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 왔고 그 효과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Botvin et al., 1984).

또한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범죄집단에서의 가입의 부정적 결과를 가르치는 예방전략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Thompson과 Jason(1988)은 학교에서의 범죄집단방지 교과과정이 위험집단 아이들의 범죄집단 가입의 예방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연구했는데, 실험집단의 아이들은 차후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경찰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했던 범죄집단 저항 교육과 훈련(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Esbensen and Osgood, 1997) 프로그램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된다.

비행친구와 사귀다거나 범죄집단의 결성은 보다 거시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주장되기도 했다. 즉 지역의 해체로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가 약화되면서 청소년범죄자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지역에 많이 눈에 띄게 되면서 지역의 아이들은 비행친구와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범죄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내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과 놀이공간의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Thurnman et al., 1996). 그러한 점에서 범죄집단에 대한 대책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과도 밀접히 연관되면서 논의되었다.

5) 지역사회요인 대처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성향, 가정, 학교, 비행친구관련 대책 이외에도 지역차원의 대처 노력은 주요 전략의 하나이다. 사회해체이론가들은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부적응적 측면들의 그 근원이 되는 지역차원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대

부분의 노력들이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환경 등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중심의 범죄예방책을 강구하려고 했었다면 지역차원의 대처는 보다 거시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차원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절히 성장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제공하며, 아울러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를 방지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다.

시카고지역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였다. Shaw와 McKay에 의해 수행되었던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빈곤하고 해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자조직 조직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늘리며, 지역내 범죄집단을 통제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즉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기업, 종교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예컨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하며, 범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스포츠를 통해 공격성을 발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범죄자들과 갱들을 지역내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접촉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제하려고 했다. 아울러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내 의료시설 등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며, 지역의 환경을 청결히 정화하고, 성인들이 출입하는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환경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카고지역 연구는 1931년부터 1944년까지, 그리고 1944년부터 19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 년 동안 실시되어, 그 동안 인구구성원의 변화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사회사업가를 할당하여 범죄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큰 효과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임이 밝혀져, 실험이 실시된 지역의 청소년들의 재범율은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chlossman and Sedlak, 1983). 그렇지만 시카고지역 연구와 유사하게 시행된 1950년대의 보스톤의 지역연구나 이후의 지역연구의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불분명하며, 더욱이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여러 조직들의 조직화를 필요로 했던 이 프로그램은 실제 정작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한 빈곤지역 등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도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지역차원의 프로그램이었다. 방과후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운동경기나 음악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막고 건전한 친구와 접촉하게 하며 건전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 기여했고,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지역차원의 범죄대책 방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Jones와 Offord(1989)에 의해 진행되었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5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2개월간 방과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실험집단의 지역은 청소년범죄에 있어 75%의 감소율을 보여 그 효과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cKay(1993)는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Schultz et al., 1995)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위험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시카고지역 연구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사업가 할당 프로그램의 대안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려 했던 지역사회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이 있었다. Big Brother/Big Sister 프로그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소외된 아이들과 하나씩 결연을 맺고,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운동 등의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등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사회유대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적 지지 이외에 학교공부의 지도도 포함되기도 했다.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은 시카고지역 연구에서의 사회사업 할당과 달리 특별히 범죄집단이나 갱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전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 청소년 혹은 문제청소년들의 위험에 사전 개입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범죄집단과의 기회를 차단하게 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그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무단결석을 방지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도 많았는데, 학교중심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Slicker and Palmer, 1993). 그렇지만 보다 최근의 Tierney와 동료들의 연구(1995)에서 학교중심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10세에서 14세의 아이들에게 실시하여 그 범죄예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효과가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위험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청소년범죄의 대책을 위해서는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외에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 주요 정책사항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communitiy crime prevention)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Rosenbaum, 1988; Hope, 1995; Rosenbaum et al., 1998; 최인섭, 진수명, 1995).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활동,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사업가 할당 이외에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이 강조되었듯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전략에서 더 나아가 지역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보다 거시적 전략이다.⁷⁾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범죄기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사전적인 범죄예방활동에 주목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그 주요 전략의 하나가 된다. 이 전략은 청소년범죄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기회의 상황을 차단하려는 데 주목한다. 즉 범죄기회를 막기 위해 범죄에 많은 노력이 들게 여건을 조성하거나, 범죄로 인한 발각가능성과 위험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경비는 그 주요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이중창, 창살, 경보장치, CCTV

7) 혹자들은 이 전략을 사회예방모델(social prevention model)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해체이론과 범죄기회이론에 근거하여 지역환경의 개선과 지역차원의 범행기회의 차단을 통해 지역의 범죄를 해결하고, 또한 지역차원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Rosenbaum et al., 1998).

등을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민간경비를 통한 범죄기회의 감축 노력은 그 효과면에서 의문시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차원의 범죄방어 노력은 자칫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삭막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민간경비를 통한 개인방어의 노력은 범죄방어 장치를 하지 않은 다른 이웃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범죄전이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전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예방책이라고 지적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지역중심의 범죄기회의 차단에 주목했다. 예컨대 거리의 조명을 밝히고, 건축물이나 도로의 형태를 개선하고, 거리의 낙서, 쓰레기 등 무질서한 징후들을 제거하는 소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책을 통해 지역차원의 상황적 범죄예방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Taylor and Gottfredson, 1986). 그렇지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주목했던 점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유대를 강화하여 어떻게 하면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있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그러한 점에서 범죄기회이론 이외에 사회해체이론에 영향을 받은 바 컸다. 사회해체이론가들은 지역이 해체된 곳에서 범죄율은 높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공동의 노력이 범죄대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의 조직화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감시해 주는 비공식적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차원의 범죄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조적 조직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즉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핵심적인 필수요건이 된다. 즉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지역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내 범죄발생의 기회를 차단하는데 주목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경찰과 함께 방법순찰을 강화하고, 이웃감시 등을 통해 이웃들간에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무질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Hope, 1995).

지역내 경찰의 순찰활동은 범죄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찰순찰이 강화되면 잠정적 범죄자에게 검거 가능성을 높여 범죄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순찰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범죄기회의 차단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순찰에 참여하는 주민방범순찰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방범순찰은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높임으로써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차단하려는 주요 전략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지역주민들의 방범순찰의 범죄예방효과는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Pennell, 1989; Lab, 1992).

그러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의 하나이자 지역사회중심의 상황적 차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웃감시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감시해 주고,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가 즉각 신고하는 형태를 갖추며, 지역내에 범죄예방 표식을 통해 잠정적인 범죄자의 범행의도를 약화시키고자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차단하려는 범죄예방활동인데, 이웃감시의 범죄예방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osenbaum et al., 1998).

지역내 무질서의 징후들을 개선하려는 것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또 다른 그 주요 정책사항으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거리의 쓰레기나 버려진 폐차, 담장의 낙서를 포함한 무질서의 징후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kogan, 1990; Taylor, 1996).

지역주민의 방범순찰이나 이웃감시, 그리고 지역의 무질서를 해결하려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은 범죄기회를 차단하려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조직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간의 유대와 친밀감, 결속력을 증진하여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지역의 조직화로 이웃간에 결속력이 강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모에 의해서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적절히 감독, 통제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지역의 결속력과 유대가 강화될 때 지역내 청소년들도 지역의 한 일원임을 깨달아 집합적 규범의식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범죄가 통제될 수도 있다.⁸⁾

8) 아울러 지역차원의 범죄예방 노력으로는 지역차원의 범죄기회 감소 노력 이외에 지역의 경제여건을 증진시키거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다루는 거시적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기도 했다(Hope, 1995; Hawkins et al., 1997; Reppucci et al., 1999).

그렇지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내 청소년들의 적절한 사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로 지역차원의 환경개선 노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또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노력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 대처 :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범죄의 대책에 있어서는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관련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대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은 대부분 개인성향의 문제 이외에 가정환경의 문제와 학교적응의 실패 등 복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외국에서 있었던 기존 연구들에서의 통합적 대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의 통합적 대처의 노력은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사전적 예방의 측면에서부터 위험청소년,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들에게 각기 적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있었던 통합적 대처 노력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것을 다섯 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들을 다뤄보기로 한다. 다섯 부류는 첫째 일반청소년 전체, 둘째는 문제성향과 행동을 보이는 위험징후의 청소년들, 셋째는 지위비행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다이버전의 조치를 받는 청소년들, 넷째는 절도나 강도 등 다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 내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 그리고 다섯째로 살인, 강간 등 폭력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에서 위협이 되는 시설내 처우를 받는 청소년범죄자들이다.

1)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일반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반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관리훈련이나 적절한 양육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가정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문제해결능력 등의 사회기술, 대인갈등 해결 능력이나 대안적 사고능력, 그리고 화조절 등의 기술을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통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고, 부모관리훈련과 아이들을 위한 훈련, 교과과정이 동시에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상당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평화롭고 긍정적 방식의 반응 교과과정 연구(Responding in Peaceful and Positive Ways(RIPP))(Farrell and Meyer, 1997)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중심의 예방책 이외에 부모의 훈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력을 예방하는 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452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청소년들의 폭력범죄를 크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학교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한 개인훈련과 그리고 부모훈련을 강조했던 통합적 프로그램은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를 받아 왔다(Guerra et al., 199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취학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것은 학교적응 능력이 어려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리 취학전 연구(Perry Preschool Study)(Schweinhart et al., 1993)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취학전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학업능력, 그리고 인지능력을 키워줌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차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사회기술을 가르치고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훈련을 포함시켰던 통합적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큰 지지를 받고 있다(Trembley et al, 1995; Webster-Stratton, 1998).

학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반아이들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이 된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관리 프로그램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학교요인 대처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급관리나 학교환경의 개선에만 노력을 기울였던 대책의 예방효과는 미비했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업증진, 학급관리 프로그램도 보다 통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와는 달리 후기에 있었던 시애틀 사회발전연구(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Hawkins et al., 1992;

O'Donnell et al., 1995)는 대표적인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르도록 적절한 보상과 벌로 학급을 관리하는 것과 아울러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에 대한 관여, 노력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협상기술을 가르키는 등 인지 및 사회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양육방법을 지도하도록 했던 대표적인 통합적 프로그램이었다.

이 연구는 학교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따라서 선생들에게 학급관리 및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학급관리나 수업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성향과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의 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환경의 개선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공부예의 관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나 내적 성향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시애틀 연구에서는 18개의 초등학교의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연구에서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실시한 경우는 이후 청소년기의 폭력범죄의 예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실시한 경우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해 어려서의 프로그램의 실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은 주로 부모훈련과 아이들에게 문제해결능력과 인지, 사회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업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 학급관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인지기술과 부모훈련을 포함하는 통합적 예방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취학전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그들이 어린 연령기여서 상대적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범죄집단예의 가입에 대한 예방책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비행친구와 어울리거나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 성장기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을 통해 친구의 압력을 거절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사회기술을 가르치고, 또한 범죄집단예의 가입의 부정적 결과를 알리는 예방책은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범죄집단의 가입을 방지하면서 또한 다른 대처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대표적인 통합적인 대처로는 범죄집단 거부(Gang Resistance Is Paramount) (Arnette and Walsleben, 1998)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는 범죄집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외에 지역사회, 가정, 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예방프로그램으로, 일정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임을 가져 그 모임에서 부모에게 갱의 활동, 가정의 역할, 스포츠나 그 밖의 대안활동, 갱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의 대처 등을 소개하여 부모의 협조를 구한 프로그램이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범죄의 결과, 학업에 정진할 때의 장래의 이익 등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했던 것이었는데,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결과를 제시했다.

2) 위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두 번째 부류의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는 상담가나 치료자가 문제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그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하거나 혹은 그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훈련이나 가족치료 등을 통해 문제아들의 가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목했었다. 위험청소년 혹은 위험요소를 앎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나이가 들기 전 보다 조기에 어린 위험아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보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Dishion and Patterson, 1992).

Satterfield와 동료들(1987)의 연구에서는 6세부터 12세에 해당되는 문제아들을 대상으로 부모훈련이외에 그들의 높은 활동수준 경향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별치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를 알게 하는 훈련 등을 지도하도록 했는데,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학생 연령의 위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의 능력 배양과 함께 부모훈련을 동시에 실시한 실험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Dishion and Andrews, 1995).

Kazdin과 그 동료들(1989, 1992)의 피츠버그 대학 연구(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에서는 7세에서 13세에 해당하는 문제아들을 대상으로 부모관리훈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특히 인지훈련으로 개입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제시했으며, Tremblay와 동료들의 몬트리올 실험연구(Montreal Longitudinal Experimental Study)

(1992)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의 문제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훈련과 함께 아이들에게 사회기술 혹은 대인관계능력, 화 조절 기술을 가르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그들의 12세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음을 밝히고 있다.⁹⁾

효과적인 학급관리의 중요성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또한 강조되어 왔다. 즉 학급관리를 위해 명백한 학급규칙을 세우고, 학생들이 잘 했을 때는 보상으로, 그리고 잘못된 행동 시에는 적절한 벌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Kellam과 Rebok(1992)의 좋은 행동 게임(Good Behavior Game)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연구로, 학급관리와 아울러 문제학생들의 공격적 성향과 행동을 치유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였다. 학급학생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이때 문제학생들을 똑같이 각 집단에 소속하게 한 후 선생님은 학생들을 적극 감독하면서 어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가 속한 집단에 벌점을 주고 나중에 종합평가에서 벌점이 5개 미만인 집단에게는 보상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이 있는 1년 후 공격적이고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덜 공격적으로 변했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6학년 때까지 있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am et al., 1994).

학교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으로는 아동발달연구(Child Development Project)(Battistich et al., 1996)가 또한 대표적인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학업능력 및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고자 협동적 학습방법 이외에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행동 혹은 인지발달을 위해 개인처우를 실시하며, 또한 학교와 부모의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가정의 참여를 도모한 프로그램이었다. 24개의 초등학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의 1년 후의 평가에서 실험집단은 학업성취 및 학교에 대한 애

9) 그렇지만 개인의 성향의 치료와 개입에만 주목했던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ochman의 연구(1992)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조절과 인지행동치료를 강화하여 그들의 범죄를 조기에 막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연구결과는 어려서의 개입이 이루어졌음에도 큰 효과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학습능력의 인지력 향상의 효과를 알아보려 했던 다른 실험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Kellam and Rebok, 1992; Dolan et al., 1993).

착과 관여도가 증가했으며, 음주나 흡연 이외에 다른 많은 범죄에 있어 감소를 보였다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가정과 학교의 협력(Family and School Together(FAST) Track)(Bierman et al., 1996)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관련 여러 요소들을 개선하려는 총체적 교육을 통한 긍정적 행동프로그램(Positive Action through Holistic Education)의 내용 이외에 아이들에게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부모훈련을 포함한 통합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유치원 연령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9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에서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임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범죄집단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다분히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왔는데, Spergel과 Grossman(1997)의 연구에서는 범죄집단 청소년들에게 개인상담과 아울러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들의 폭력범죄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3) 다이버전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다이버전의 효과에 관한 초기의 대표적 연구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서의 다이버전 연구(Sacramento County Diversion Project)(Baron and Feeney, 1976)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미한 지위비행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사회내에서 단기간의 위기개입과 가족상담의 처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전문상담가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구성원에게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이버전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 다이버전이 실시된 청소년범죄자와 통제집단이 되었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청소년범죄자들과의 재범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청소년 다이버전 연구(Juvenile Diversion Project Project)(Palmer et al., 1978)에서도 경미한 청소년범죄자에 대해 청소년 및 가족상담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다이버전이 실시된 청소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지위비행의 재범율은 각각 14.0%와 15.4%로 나타났고,

보다 심각한 형법범죄의 경우 각각 15.5%와 20.3%의 재범율을 나타내 다이버전은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 방지에 보다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최근의 미시간 주의 다이버전 연구(Michigan State Diversion Project)(Davidson et al., 1987)에서는 절도나 사소한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에 다니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개인상담과 아울러 가정,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작았던 이유로 그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이버전 조치에 있어서도 통합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집중보호감독 프로그램(North Carolina Intensive Protection Supervision Project)은 지위비행 청소년들, 특히 위험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주변 환경 특성상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상담가를 고용하여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가족성원과도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가정의 협력을 얻었던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청소년들이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는 결과를 보여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and et al., 1992).

이처럼 다이버전 조치의 경우도 개인치료 이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상담과 치료, 그리고 학교재적응을 위한 도움 등 통합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범죄를 저지른 12,3세 이하의 다소 어린 아이들에 대해 개입이 있었던 경우의 그 효과를 다룬 연구를 보면 미시간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있었던 초기범죄소년을 위한 프로그램(Early Offender Program)(Howitt and Moore, 1991) 연구가 대표적이었는데, 청소년범죄자들에게 가정기반의 전문화된 개입형태로 개인치료, 가족치료, 그리고 학과공부의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실험집단의 재범율은 극히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 지역사회내 처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내 처우의 효과에 대한 초기의 대표적 연구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실시되었던 지역사회 처우 연구(Community Treatment Project)

(Palmer et al., 1971)가 있다. 주로 재산범죄 청소년들에게 실시되었던 이 연구에서는 시설내 처우 청소년과 가정방으로 지역사회내 처우를 받은 청소년과 재범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처우는 개인치료와 행동감독에 치중했다. 실험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재범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이후 연구들을 보면 지역사회내 처우에 있어 교정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질 때 그 효과는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오하이오주에서 실시되었던 루카스 카운티 집중감독 프로그램(Lucas County Intensive Supervision Unit)(Wiebush, 1993)에서는 개인상담, 가족성원과의 상담, 그리고 학교적응을 위한 도움과 아울러 보호관찰관의 보다 철저한 행동감독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통제집단인 시설내 처우 청소년들과 재범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두 집단 모두 재범 가능성은 낮았고 비용면에서 집중감독 프로그램이 저렴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 프로그램(Wayne County Intensive Probation Program)(Barton and Butts, 1990)에서는 폭력범죄자를 제외한 재산범죄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개인상담과 가정중심의 서비스, 학교재적응을 위한 서비스이외에, 여가활동, 취업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보다도 재범 감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Lipsey(1992)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다룬 메타분석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듯이 지역사회내 처우가 시설내 처우보다 재범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웨인 카운티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이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 감독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교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내 처우에 있어 통합적 대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여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Henggeler와 그 동료들의(1992, 1993, 1997) 가정과 이웃보호 연구(Family and Neighborhood Services Project)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인성향 및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요소를 다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Henggeler와 동료들의 다체계적 치료(multisystemic therapy)는 청소년들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후적인 통합적 프로그램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문제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석사학위이상의 전문가가 셋내지 여섯 가정 등 적은 수의 가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강화, 학습 등 행동원리를 기초로 개인의 행동 및 인지변화 이외에 부모를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정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학교에의 재적응과 학업증진, 그리고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통합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정부기관 혹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에 또한 주목하였다.

Henggeler와 동료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가정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체계적 치료를 실시했을 때 그것은 시설내 처우 혹은 기존의 보호관찰 등의 처우보다 재범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이후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으며, 보다 최근의 Aos와 그 동료들의 연구(1998)에서는 다체계적 치료가 사후적인 다른 대처방안들보다 재범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중보호관찰이 22%, 기능적 가족치료가 27%, 다이버전이 34%, 대리부모가 37%의 재범율의 감소를 보인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체계적 치료는 44%의 가장 높은 재범율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비용면에 있어서도 다체계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역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지역사회내 시설처우의 중간처우의 경우는 그 효과가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 대리부모(Foster Homes)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 청소년범죄자들을 머무르게 하여 가정의 따뜻함과 안락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사회기반 시설처우로, 1960년대 캔사스시에서의 성취장소(Achievement Place)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 프로그램이었다. 대리부모 등의 지역기반 시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지만(Kirigin et al., 1982), 그 장기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개인에 대한 보다 전문

적인 행동, 인지치료가 여유치 않고, 특히 위험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들에게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청소년들의 부모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프로그램에 실제 청소년들의 부모가 포함되고 행동치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형태를 띄게 될 때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Galaway et al., 1995; Lipsey and Wilson, 1998).

또 다른 지역사회 시설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산비행 청소년 등 폭력적이지는 않은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설내에서 병영훈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것 이외에 개인상담과 치료, 그리고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병영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렇지만 Lipsey(1992)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범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병영시설이 아닌 일정 지역시설, 예컨대 집단가정(Group Homes)에 수용하면서 심신단련을 위해 암벽등반이나 카누 등 야영극기훈련이 실시되었던 경우, 기존의 집단가정 프로그램이나 병영훈련의 경우보다 다소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경우도 지역사회기반 시설처우에서 야영훈련과 함께 가족상담과 학교과정에 대한 감독, 그리고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Greenwood and Turner, 1987).

5) 시설내 처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시설내 처우의 대상은 주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일삼는 위험청소년들에게 국한된다.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호의 목적에서 시설내에 수감하는 이유가 크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위험청소년들에게도 교정의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폭력범죄 청소년 프로그램(Violent Juvenile Offender Program)(Fagan, 1990)은 폭력위험 청소년들을 사회에 복귀, 통합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그 동안의 주장에서는 시설내 처우가 폭력범죄 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더욱이 시설내 처우의 경우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규모가 작고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폭력범죄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러한 환경 여건을 갖추고, 행동강화원리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인치료와 함께 학과교육, 직업훈련, 그 밖의 성공의 기회의 제공과 청소년들의 주변 사회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설내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지역사회기반의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했다.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율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설내 처우의 경우 Andrew(1990)도 지적했듯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더 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치료와 함께 가족치료가 병행된다던지 혹은 직업교육이 강화될 때 그 효과는 더 할 수 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후기의 연령대인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개인성향 치료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외에 직업훈련이나 취업보장의 정책은 그들의 재범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Howell, 1995).

그렇지만 재범방지의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Lipsey(1992)가 지적했듯이 시설내 처우의 청소년들보다 지역사회기반의 처우 청소년들이 재범율이 다소 낮고 사회복귀가 용이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Andrews와 Bonta(1998), Krisberg와 Howell(1998)의 연구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성인과 달리 비행청소년의 경우 시설내 처우의 대상자는 가능한 한 줄이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처우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내 사후적 처우에 있어서도 개인차원의 경우 개인상담의 노력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 및 인지치료를 실시하고, 아울러 Henggeler의 통합적 접근의 효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지역사회기반의 개인,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모두 접근하는 통합적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Ⅳ.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다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전략 : 새로운 전략의 모색

1.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의 안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 이외의 기관, 예컨대 가정, 학교, 사회복지기관, 기업 등의 비공식적 부분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 대책에는 어느 한 기관만이 관여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기관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연계되어 청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기관의 종합적 연계전략의 하나의 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다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 대처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여러 차원의 통합적 전략을 제시해 왔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통합적 전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내 전문가 혹은 상담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적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훈련,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학업적응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Henggeler의 다체계적 접근은 그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범죄자들에게 여러 차원의 위험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종합적인 대처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

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환경개선 등 지역차원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기반의 범죄대처 전략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 상담가를 배치, 운영하고 문제청소년들이나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전략은 아니다. 즉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 개개인이나 가정환경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지역기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환경의 개선 등 지역차원의 대처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역의 조직화였다. 즉 지역주민들이 지역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자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리고 종합적 대처 전략에서는 개인성향, 가정, 학교, 비행친구,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관련 기관들이 지역조직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지역사회내에 여러 관계기관들, 예컨대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 강화 등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 대처 전략에 있어 주요 핵심사항이었다.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지역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으로서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y partnership)로 불리는 새로운 전략은 198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면서(Blagg et al., 1988; Sampson et al., 1988; Crawford, 1994),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기관 협력체계는 범죄예방에 국가기관만이 관여할 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등장한 전략이었다. 여기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국가기관과 비공식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범죄예방 전략을 강구하려고 했다.¹⁰⁾

Hawkins와 Catalano(1992)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ies That Care)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내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처로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주목했다. 사회발전모델에 근거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지역조직체를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사회인지기술과 함께 부모를 훈련시키고, 학급관리와 다양한 교과과정의 개발, 그리고 학교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며, 방과후 여가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주목했다.

Howell(1995)도 다기관 협력의 통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친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소들을 발견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한 기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내의 청소년, 부모, 학교, 사법기관, 종교기관, 기업,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범죄의 예방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때 지역의 지도자를 선발하여 장기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기관 협력 전략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두었고 정작 필요한 지역차원의 환경개선 노력에는 미흡했었다. 지역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였던 연구는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Safer Cities Program)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1988년도에 시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조직체(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NARCO))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내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범죄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사회환경을 개선함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히 이웃감시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

10) 이러한 다기관 협력체계는 오래 전 미국에서도 진행되었었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청소년보호국(Youth Service Bureaus)에서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사소한 청소년범죄자들을 위한 즉각적 개입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청소년보호국의 직원이 경찰, 보호관찰관, 보건소, 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 자원봉사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범죄자들에게 24시간 상담, 가족상담, 취업지원,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의 제공 등 다양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었다.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조정관을 선발해 여러 기관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조직체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지역주민 대표, 자원봉사자, 경찰, 보호관찰관, 지역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모임을 통해 지역문제와 범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해 가면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지역내 조명, 경보장치의 개발, 지역내 물리적 환경의 개선 이외에도 지역내 빈곤자, 여성, 노약자 등 사회취약층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개발 등에도 관심을 가져 범죄기회의 차단 이외에도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후 보다 최근에는 다기관이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들 개인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갖는 보다 종합적인 전략이 시도되었다. 제거와 부흥(Weed and Seed) 프로그램(Roehl et al., 1996)은 경찰을 포함한 다양한 사법기관과 사회복지기관, 학교, 기업 등이 연계하여 폭력범죄 청소년들에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방, 개입, 교정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썼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지역내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 및 취업기회의 증진에도 노력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종합적 지역사회 프로그램(Comprehensive Communities Program)(Kelling et al., 1997)은 또 다른 대표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정부 이외에 민간기관, 그리고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결연을 맺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갖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유니온 하이츠 마을에서는 이웃단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종합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차원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Randall et al., 1999).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기반의 여러 기관의 협력하에 종합적 치료를 통해 청소

년범죄자들에게 가정기반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한 교육, 직업,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 예컨대 지역의 빈곤, 실업, 가정폭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강조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여러 기관의 협조체계를 강조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조직체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 효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개인에 대한 대처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회의 환경의 개선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된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개인성향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 사회의 위험요소에 의해 비롯된다고 한다면 이들 위험요소와 관계하는 다른 모든 기관들이 또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범죄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공식 및 비공식적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들이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환경개선에도 힘쓰는 종합적인 연계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 예방 전략은 일반아이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위험이 높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범죄자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앞서 제시한대로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표 2>에서와 같이 이들 다섯 부류의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그리고 사회의 대처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사전적 형태나 사후적 형태 모든 단계에 대처 프로그램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사회의 각기 대처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러한 대처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Howell, 1995; Bilchick, 1998).¹¹⁾

11) 사후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범죄자들을 분류하여 다루는 이유는 위험성과 동시에 행위의 책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위험성이 적고 죄질이 경미한 청소년범죄자에게는 보호, 통제의 정도를 줄이지만 심각한 청소년범죄자에게는 통제의 강도를 높이고, 또한 사회보호의 차원에서 시설에 격리한다. 이러한 차등적 사후조치는 비용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에만 의존하는 처우방법보다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심각한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지역사회내 처우가 선호된다. 지역사회내 처우가 있게 될 때 여러 서비스가 보다 가능

<표 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처

일반청소년 프로그램	위험청소년 프로그램	다이버전 조치	지역사회내 처우	시설내 처우
		개인성향대처 가정요인대처 학교요인대처 친구요인대처 지역사회요인대처		
가정 학교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경찰 보호관찰기관 종교기관 행정기관 기업체 지역주민				

결국 청소년범죄 대책을 위해서는 개인상담 및 치료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의 개선을 요하며, 지역사회가 운영의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내의 모든 기관이 서로 연계되어 협조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범죄의 예방에 힘쓰며, 문제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청소년범죄자들을 치유, 교화, 감독하는 데 있어서 지역내 각 기관들이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또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각 기관이 연계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소년범죄의 근본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의 대책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어떻게 통합, 연계되어야 하는가의 지역사회중심의 다기관 연계의 종합적 대처전략을 제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계되어야 할 관계기관은 가정, 학교, 청소년복지관, 종교기관, 지역기업체, 지역행정기관, 지역주민, 그리고 경찰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기관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연계하여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설내에 있어서도 앞서 제시한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와 관련하는 보다 적절한 교정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단순히 처벌과 통제에만 주력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Andrews et al., 1990; Lipsey, 1992). 사후적 조치를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달리 제공할 것이냐의 측면보다는 그들의 행위의 책임, 그리고 사회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감독과 통제를 달리할 것이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Howell, 1995).

2) 관련 기관과 역할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또한 그들 기관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각 기관의 연계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주요 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정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청소년범죄가 어린 시기의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여러 관련 기관들은 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가정의 기능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이 지역사회내 처우를 받게 될 때에도 상담가나 보호관찰관 등은 청소년범죄자들의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까지 청소년대책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만 주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양육방법을 교육하고,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관

청소년들의 개인성향이나 가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혹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가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에 상담가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관 혹은 청소년복지관과 같은 기관의 설립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지역내에 설립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상담가나 사회복지사와 수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복지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상담가나 사회복지사는 지역내 가정을 방문하면서 문제아이들을 발견하고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더욱이 청소년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관리교육이나 가족치료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담가나 사회복지사들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청소년들 이외에 그들의 부모에게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 처우를 받는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보호관찰관 이외에 상담가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 교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학급관리, 그리고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당국과 학교선생님들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학교도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연계되어야 할 주요 기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술과 인지훈련을 위한 교과목의 운영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예컨대 상담가나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가들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상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유해환경의 유혹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 일정 시설과 공간이 확보되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를 통해 심적 긴장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내 여러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대와 친근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기관이며, 각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배치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경 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범죄와 같은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찰순찰활동이다. 경찰은 경찰순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욕구와 동기를 차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경찰은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내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내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청소년들을 발견, 선도, 감독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방문과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문제청소년들을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선도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지역내 범죄집단을 파악하고 선도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문제청소년들과 결연을 맺어 선도할 수도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보호관찰기관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면 보호관찰기관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내 처우가 확대되고 청소년범죄자들이 가정과 학교에 복귀하여 사회에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내 보호관찰기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 진다. 그러나 대도시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 운영체계에서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처우, 예컨대 성향치료 이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이 적절히 감독, 통제됨으로써 사회보호의 목적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내 청소년범죄자들을 교정,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지소를 확대, 설치하여 다른 기관과 연계하면서 보호관찰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종교기관

청소년범죄자들이 선도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한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가, 사회복지사나 보호관찰관의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종교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인격과 도덕적 품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함께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될 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들을 종교기관에서의 교인들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지역내 불우한 이웃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봉사활동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수혜를 받는 기관에서도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자들을 종교기관내 청소년부의 청소년들과 결연을 맺도록 하는 등 종교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고 그들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기업체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학과수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과수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적응에 실패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적성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훈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보다 취업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더구나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내에서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취업의 범죄방지 효과는 크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해 본다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대책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범죄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지역기업체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

지역사회기반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일정 교육과정을 받고 청소년들의 상담을 담당하기도

하며, 상담가와 협조 혹은 상담가를 보조하여 청소년들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여 가정심방과 순찰에 참여하기도 하며,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상담가, 경찰, 보호관찰관의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불우청소년이나 청소년범죄자들과 결연을 맺어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일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전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민방범순찰이 지역전체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웃감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행정기관

지역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적극 협조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동참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역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벽보나 쓰레기, 건축물 자재, 폐기물 등을 수거하거나 조명시설 등의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청의 청소년관련 복지과에서는 지역내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복지관에 대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 및 취업관련 부서에서는 청소년범죄자들의 취업을 위해 체계화된 직업훈련 및 지역기업체와의 연계에 노력해야 한다.

3) 종합적 연계 방안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단위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위의 기관들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관들의 협력 운영에 있어 적절한 지역단위는 무엇인가? 여러 관련 기관이 연계되는 종합적 연계전략의 지역사회의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기능 측면과 비용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아울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운영이 비용의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동 단위의 지역단위가 가장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 단위의 운영이, 그리고 운영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운영단위는 보다 소단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기관들의 연계 체계는 운영의 기능과 비용을 감안하여 어떠한 것은 구 단위의 차원에서, 또 다른 기관들의 운영은 동 단위의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 작은 통 단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 단위의 지역사회를 운영의 기본으로 하여 효율성과 비용에 따라 구 단위 혹은 통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고려되어야 할 가장 필수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역의 단위를 선정함에 있어 경찰과 시민이 연계되는 주민방범순찰활동이나 이웃감시, 그리고 지역의 무질서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가장 적절한 운영단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방범순찰이나 이웃감시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유대나 주민들간의 상호접촉, 친밀도는 전제되어야 할 주요 요소가 된다. 지역의 유대와 친밀감 없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운영단위가 구 단위로 설정이 된다면 지역단위가 다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기관들의 연계 체계에 있어 적어도 동 단위의 운영이 가장 적절한 운영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순찰은 경찰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단위로 운영하는 파출소와의 연계가 수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실제로 지역주민의 참여는 동 단위보다도 작은 일정 아파트 단지나 통 단위의 이웃단위에서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면 동 단위의 주민기구와 파출소가 보다 작은 소단위의 지역을 관장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나 부모관리훈련, 가족치료 등의 가정기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지역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일반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에 대한 사전적 교육, 문제징후를 보이는 위험청소년들과 그

들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그 밖에 지역사회내에서 보호관찰 등의 처우를 받는 청소년범죄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이를 담당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는 관할 구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문제를 담당하고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상주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동별로 혹은 구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청소년들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상주하면서 관할 구역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원활히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별 청소년센터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구 단위의 설치보다는 동 단위의 설치가 있게 될 경우 청소년들은 수시로 청소년센터를 방문하면서 상담을 받고, 또한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도 가정방문 등 동 단위의 일정 지역을 담당하면서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문제만을 위해 별도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관 산하의 동별 지역사회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그리고 빈곤, 여성, 노인, 의료 등 사회복지 제반의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내에서 청소년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운영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건이나 비용과 예산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복지센터를 동별로 설립하기보다는 동사무소내의 주민자치센터내에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운영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새로운 기관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차 동별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설립이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센터의 설립은 모든 동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지역이나 우범지역 혹은 청소년문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면서 차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복지센터나 동사무소내에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를 배치하는 동 단위의

운영은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구청 가정복지 혹은 청소년관련 부서의 지원과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즉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구청에서는 관할 동에 있는 여러 복지센터와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들을 지원, 관리, 감독하며,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구 단위의 구청 복지과의 지원을 받아 관할 구역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 단위 지역내 각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은 지역내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때 학교내에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상담교사가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상담가와 연계를 맺고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즉 지역내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는 동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여러 학교의 상담교사와 주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된다.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관을 구별로만 설치하여 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나 혹은 구청의 복지과 담당자가 관할 구역의 학교를 관장하게 되는 경우는 담당하게 되는 학교의 수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효율면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치안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또 다른 중추적인 기관이라 한다면, 파출소의 운영의 측면을 보더라도 파출소가 포함되어 타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동 단위의 운영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즉 파출소의 경찰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치안을 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동 단위의 운영으로 지역내 학교나 복지센터와 연계를 맺고 문제징후를 보이는 위험청소년이나 청소년범죄자의 선도에 유기적으로 동참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즉 파출소 외근경찰이나 청소년담당 경찰은 관할 동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와 수시로 접촉을 하여 연계를 맺고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교사들을 통해 문제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관할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문제청소년들의 명단도 파악하여, 지역내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문제와 관련한 업무는 구 단위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이 주요 업무를 맡는다. 그렇지만 구 단위의 여성청소년계 경찰도 동 단위로 일정 구역과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인력을 배정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나 상담가와 함께 유기적으로 청소년들

을 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한 이후의 사건처리나 지역내 유해업소의 단속의 경우 등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구 단위로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지만, 그러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로 동 단위의 파출소 경찰관, 그리고 동 담당 여성청소년계 경찰관과 함께 지역내 청소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해 기본 운영은 동 단위로 하되 필요시 동을 통괄할 수 있는 구 단위의 운영방안도 병행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되는 일이나 청소년들, 특히 일반 혹은 위험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동 혹은 통 단위의 작은 단위 체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구 단위에서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들은 그 수에서 적은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이버전 조치나 보호관찰의 운영의 경우 보호관찰소 지소를 동 단위에까지 설치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적절치 않고 이는 구 단위로 지소를 두어 구 단위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범죄자들의 취업관련 문제는 구 단위의 구청 노동관련 부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기업과 연계를 통해 취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범죄자들의 선도를 위한 종교기관과의 협력체계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청소년수련기관의 운영,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역 무질서 해결과 유해업소 단속과 같은 영역의 일들도 구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연계전략은 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학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운영으로 하면서, 효율성과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이웃단위로 세분화하고 혹은 구 단위로 통괄하여 운영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종합적 연계 방안에 있어서 운영의 주체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어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환경의 개선을 통해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함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가정, 학교, 복지기관, 경찰,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기업체, 종교기관 등 청소년범죄와 관련하는 기관들이 하나의 공통된 업무를 위해 조화롭게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각 기관의 전문 영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 용어에서부터 서로간에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며, 예산 배분의 문제나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힘의 경쟁에서 연계체계는 협조보다는 오히려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Walsh et al., 1999). 이러한 여러 기관들간의 갈등과 이해 관계의 차이는 협조체계에 있어 장애요인이자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Sampson과 그 동료들은(1988) 여러 기관들의 연계체계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정부기관이 주도권을 잡고 다른 기관들을 지휘하면서 협조체계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예컨대 경찰이나 보호관찰기관이 중심축이 되어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주로 사법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학교나 종교기관 등 다른 비공식기관에게 다소 통제적이고 강압적이 될 수 있으며, 주민 순찰이나 이웃감시, 지역의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청소년들에게 개입하여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과 비공식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등 여러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서로 협상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청소년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합의와 협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자유 침해나 통제의 확대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비공식기관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어 상호 반목이 없게 되고 협력과 조율이 쉬울 것이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 기관들 사이에는 이해가 상충될 수 있고 주도권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합당한 모델이지만 실제로 과연 여러 기관들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게 된다. 여러 기관들의 협력 연계 체계를 위해서 첫 번째 방안보다는 두 번째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으나, 두 번째 방안도 과연 여러 기관들간

에 상호조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청소년비행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 예컨대 영국의 안전한 도시 연구에서도 시도되었듯이 지역주민 대표, 학교당국자, 자원봉사자, 경찰, 보호관찰관, 지역기업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조직모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대표간에는 이해관계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 중심체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의 해결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경찰과 같은 사법공식기관이 주축이 되어서는 위의 첫 번째 모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부작용의 소지가 높다.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이긴 하지만 경찰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가장 중심의 축이 된다면 다른 여타 비공식기관이 공식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불만을 살 우려가 높다.

여러 기관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구하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Randall et al., 1999). 즉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내 조직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정부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다.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불만을 살 여지가 높고, 또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도 어렵게 된다.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개인 혹은 가정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둔다면 지역내 복지센터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지나치게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센터는 학교와 연계될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 지역내에서 보호관찰 등의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처우를 담당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센터가 동네에 설치되어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복지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그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의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높다. 더욱이 청소

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차원의 서비스 이외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강조되듯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중심축이 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센터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체가 구성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범죄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기관들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체가 연계 체계의 중심이 된다면 기관들간의 힘의 관계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조직체내에서 지역대표를 장으로 하여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주기적인 모임과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며,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별 지역주민의 조직체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주민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방안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운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동 단위로 지역주민센터를 두고 지역대표와 주민들이 중심축이 되어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상주하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센터에서 지역의 행사를 수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모여 서로 접촉할 기회를 갖도록 하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주민방범순찰대를 구성하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센터에는 운동기구나 여가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혹은 지역주민들이 매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센터의 운영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운영방안은 새롭게 지역주민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의 주요 내용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방안에 있어서 그 주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조직체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센터는 지역내 여러 기관과 연계를 맺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사항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연계 체계에 대한 하나의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지역차원의 범죄기회 차단과 환경개선

주요내용: 순찰, 이웃감시, 무질서와 유해환경의 개선

참여기관: 경찰, 지역주민센터(지역주민), 구청 행정기관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범죄기회의 차단과 환경 개선의 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파출소를 거점으로 하는 경찰의 지역사회 순찰활동은 지역차원의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주요 전략의 하나가 된다. 그 동안 외국의 연구에서 경찰순찰의 범죄차단 효과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경찰순찰은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듯이(Sherman, 1989), 경찰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¹²⁾

그렇지만 순찰을 통한 범죄기회의 차단의 노력은 경찰들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찰의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순찰은 규모나 빈도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방범순찰에의 참여가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활성화될 주요 요

12) 최근의 Ward(1997)의 세인트루이스시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지역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조직체를 구성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성함과 아울러 경찰의 순찰이 활발히 진행했을 때 그 범죄예방 효과는 상당했었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사회기반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경찰의 순찰활동은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의 하나가 된다.

소가 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방법순찰의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다면 주민방법순찰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범죄는 다른 이웃의 일이지 우리 동네의 일이 아니며, 또한 방법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는 주민방법순찰에의 참여와 협력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주민방법순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찰은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순찰을 강화해야 할 장소 및 방법순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과 주민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주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방법활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주장되듯이, 경찰은 대민봉사에 힘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이웃감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듯이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찰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와 이웃감시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등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주요 관심사항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센터에서는 동네에서 개선되어야 할 지역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민간담회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야 할 일이지만,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듯이 경찰들과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빈곤지역, 무질서지역, 유해환경지역,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문제는 행정관청이 또한 개입되어 지원해야 할 사항이 된다. 즉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환경개선과 비공식적 통제력의 강화에 노력하면서 경찰과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지원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모임이 이웃단위의 보다 작은 소단위로 운영될 때 주민들의 접촉이 늘고 모임이 활성화되며 공통의 관심사가 형성되어 지역유대가 강화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 단위의 지역주민센터를 운영의 중심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파트단지 등의 작은 이웃단위로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한 동네에서도 셋 내지 네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동 단위의 지역 주민센터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부모대상의 교육

주요내용: 부모관리훈련

참여기관: 가정(부모), 지역주민센터(상담가 혹은 사회복지사) 혹은 구청

청소년범죄는 잘못된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올바르게 키우고 지도할 때 아이들은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아이들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범죄에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특히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어린 시기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취학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관리훈련과 같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하는 훈육프로그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1993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하여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계 원로들을 통해 부모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1999년까지 234회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부모는 155,064명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 그 지침이 되는 교육지도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지도자료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예절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내용으로 한다(청소년백서, 2001).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모대상 교육의 실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강좌가 지역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대상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혹은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센터내 혹은 동사무소 상주 복지전문가가 어린 자녀를 둔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교육강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구단위의 지역사회복지관 혹은 구청의 주관하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할 동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데, 교육강좌는 수시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강좌의 개설

주요내용: 인지, 문제해결능력 등의 훈련

참여기관: 학교, 지역주민센터(상담가 혹은 사회복지사), 구청, 경찰

아이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사회기술향상과 인지훈련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강좌를 통한 방안이 적절하다. 각 학교에서는 상담전문가를 두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 이외에도 상담전문가를 통해 인성교육이나 인지, 문제해결능력, 화조절 등을 포함한 정규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목이 정규교과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면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수시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구청 소속 전문가의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강좌교육의 개설은 초등학교때부터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을 위해 흡연과 음주, 환각제 사용의 유해성을 알리는 강좌도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경찰도 학교와 연계를 맺고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범죄나 범죄집단 가입의 위험성, 혹은 법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강좌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이 있다. 그렇지만 범죄와 관련한 강좌보다는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과과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에 근거한다면 이에 대한 강좌개설의 노력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학교상담전문가가 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학업증진

주요내용: 학업증진

참여기관: 학교, 가정(부모), 지역주민센터(자원봉사자)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선생은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학습관리와 관심, 그리고 상담을 제공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는 긴밀히 연계를 맺고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지를 학교선생과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관심을 갖고, 또한 학교선생도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주기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간담회나 모임을 주선하거나 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학업성취와 학교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취학전에 언어, 인지능력과 학업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취학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 아울러 이 시기에는 부모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유치원에 다닐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있게 된다.

또한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공부를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사와 부모의 관심 이외에도 학원이나 과외지도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지역주민센터내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학습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빈곤지역의 경우는 지역주민센터내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위험청소년의 발견과 상담

주요내용: 위험청소년의 발견, 상담과 치료

참여기관: 지역주민센터(상담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경찰, 학교, 가정(부모)

문제성향을 보이는 위험부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지역주민센터내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는 지역내 문제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관리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자녀양육법을 지도하고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고치도록 개입한다. 또한 가족치료를 통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한다. 또한 문제성향의 아이들에게는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기술향상 등 인지력 향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내 문제아이나 문제가정은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가정의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때 부모가 없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의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게 된다.

문제아이는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이외에도 경찰이 관할 구역을 순찰 혹은 가정심방을 하는 가운데서 발견될 수도 있다. 경찰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아이들을 발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지역주민센터에 이를 알리고 지역의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문제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문제청소년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아 사전에 선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 취학한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선생이나 학교상담가를 통해 문제아이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문제청소년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아이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부모도 치료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학교상담가는 문제아이들의 명단을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상담전문가에 알려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문제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이용 및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¹³⁾ 청소년상담은 청소년범죄자들만을 위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지역사회에 배치되어 수시로 이용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담기관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경우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에도 전혀없거나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작이어서 그 운영은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상담은 사회복지관내 상담이나 민간단체 운영기관을 통한 상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구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화상담이 대부분이어서 심층적인 상담이나 부모를 포함한 상담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기관을 통폐합하고 상담실을 지역사회내에 구 혹은 동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도록 하는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문제아와 문제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문제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의 문제와 상담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일원화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력부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나 상담심리전공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활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에 상주하는 전문적인 상담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용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상담가가 상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역

13) 현재 우리 나라의 상담기관은 각 부처별로 매우 다양하고 그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991년 청소년상담기관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설립하였고, 1999년 청소년상담원으로 개칭하여 청소년상담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16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를 전국에 5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내 청소년상담실을 전국에 285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한국 BBS연맹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밖에 청소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체가 되는 민간상담실의 운영도 상당수가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생활고충을 상담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1).

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구성하여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역내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나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6)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강화

주요내용: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참여기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주민센터, 학교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해업소 출입이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내 여가 혹은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서울 21개소, 부산 15개소, 대전, 15개소, 광주 10개소, 대구 8개소, 인천 5개소 등 구의 수와 유사하게 시설이 확보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구별로 고루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청소년 놀이공간이 양적으로 그 수가 크게 부족하다.¹⁴⁾ 지역별 분포상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시설의 확보가 미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편이어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생활권에 가까이 있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구 단위의 수련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다행

14) 현재 청소년시설은 숙박을 요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생활권수련시설과 숙박을 요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다. 생활권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 등 일상생활속에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접촉하면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생활권 수련시설은 1999년 12월 현재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79개소, 청소년문화의 집이 129개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내활동위주의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시설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근린생활권내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실시하면서 대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다.

히 국가에서도 구 단위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의 이용체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단위의 지역주민센터내에 일정 시설을 확보하거나 혹은 방과후 학교운동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시설에서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갖춘 전문적인 지도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또한 시설의 운영주체가 청소년들이 되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욕구나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 수련시설은 이용가치가 없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 소년사건처리의 절차와 사법기관 운영의 개선

주요내용: 처우분류기준의 마련, 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 다이버전의 확대 모색

참여기관: 경찰, 검찰, 법원, 분류심사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청소년범죄자를 다루는 우리 나라의 현재 사건처리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소년형사사건은 형법을 저촉한 만 14세 이상과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경찰이 형사사건 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법원의 판결을 거쳐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게 되어 있다.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청소년들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및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사건의 촉범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청소년이 경찰, 혹은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의해 발견되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법원, 즉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 혹은 통고되어 1호 처분부터 7호 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 보호자 등에 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소년복지시설 등에 위탁, 병원 등에 위탁, 단기소년원, 소년원송치 등의 처분이 이에 해당된다. 2호 혹은 3호 처분을 받게 되는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들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의 경우 죄질이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 검사는 이들 청소년을 형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 선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사건수사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또한 검사에 의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형사법원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형사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후 금고이상의 실형 이외에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사건절차는 현재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며 사건절차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청소년이 보호사건으로, 그리고 보호사건의 청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 전개되고 있어 보다 간결하고 과학적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보다 간결한 사건의 절차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건초기 절차에서 범죄수준을 파악하고, 또한 과학적인 분류로 청소년들의 잠정적인 위험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의 주장에서처럼 범죄수준과 위험성을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처우를 상정할 경우 처리절차는 간결해질 수 있다(Howell, 1995). 예컨대 사소한 경미범들(예컨대, 음주, 가출, 매춘, 무면허운전 등)에게는 다이버전의 조치가, 다소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들에게는 감독과 통제의 정도를 높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보호관찰과 같은 지역사회내 처우와 지역사회내 시설에 수용되어 처우를 받는 중간처우로 또한 구분지을 수 있는데, 덜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들(예컨대, 마리화나 사용, 기물파괴, 상점절도 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처우가, 보다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들(예컨대, 노상강도, 가구 혹은 상점침입강도, 방화 등)에게는 지역사회내 시설을 통한 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심각한 강력범죄의 청소년들(살인, 강간, 폭력상해 등)에게는 국가시설내에서의 처벌과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처우가 범죄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우에는 청소년들의 잠정적 위험성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성은 앞서 청소년범죄의 원인에서 다룬 여러 요소들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성향검사의 결과나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범죄의 최초 연령 혹은 이전의 전과 여부, 이전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수준과 위험성을 상정하여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범죄수준과 위험성에 따른 처우 결정

범죄수준	위험성		
	하	중	상
지위비행	다이버전	다이버전	다이버전
재산범죄	다이버전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
폭력범죄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	사회시설처우
강력범죄	사회시설처우	시설내처우	시설내처우

현재 청소년범죄자들의 분류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하기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범죄자들의 분류는 사건초기의 경찰선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보다 적절히 선도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청소년범죄자의 경우 다이버전의 조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사건초기에 경찰선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과학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우범소년이나 지위비행의 청소년들, 그리고 위험성이 낮은 경미한 재산범죄의 청소년들 등 다이버전의 조치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자체의 판단과 분류에 의해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선도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나누어 송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때 경찰은 형사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보호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시설내처우를 받을 수 있는 강력사건을 저지른 위험부류의 청소년들만을 검사에 송치하여 형사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다 엄격히 분류하여 강력사건에 해당하거나 위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송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나누어 송치하기보다는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일괄 송치하는 일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때 소년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 분류와 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강력사건의 위험청소년은 검사에 보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은 자체적으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경찰의 다이버전 조치가 확대될 경우 보호사건의 1호 처분이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고 혹은 집행유예의 사례는 매우 적어질 것이며 사건을 맡는 검사, 판사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청소년들도 사건처리절차에서 겪는 시간적, 심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낙인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분류를 통해 청소년범죄자에게 처분을 내리는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다이버전 조치와 지역사회내 처우는 확대되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시설내에서 처우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소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의 운영이나 증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8)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주요내용: 지역사회내 처우의 확대, 직업훈련

참여기관: 지역주민센터, 가정, 보호관찰소, 경찰, 종교기관, 기업, 구청

경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있지만 사소한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낙인을 막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소한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다이버전의 실시의 경우 경찰은 지역주민센터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검사가 해당 청소년들에게 선도를 받을 조건으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해당 청소년이 형사사건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개전의 정이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기소를 원치 않고, 다소 경미한 사건을 저지른 경우 검사재량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고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현행 문제점으로는 그 결정이 검사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여 과학적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소년형사사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현황을 보면 경미한 형사사건 이외에 강도나 강간과 같은 죄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초범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들을 조기에 사회복귀시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심각한 청소년범죄자에게는 따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다이버전의 조치는 다소 경미한 형사사건에 국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경미한 형사사건의 청소년들을 다루는 다이버전의 조치라고 한다면 이들 청소년들은 검사선에서보다는 경찰선에서 사회에서 선도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은 청소년들의 죄질과 위험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분류에 입각하여 다이버전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받은 해당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인 선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으로부터 선도를 받게 되어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범죄자의 부모도 대상에 포함시켜 가정기반의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위험한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청소년범죄자들은 시설내 처우보다는 가능한 지역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하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사건에서 2호 혹은 3호 처분을 받거나 소년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가퇴원, 가석방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된다. 보호관찰 처분은 대표적인 지역사회내 처우로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으로부터 지도, 감독, 원호를 받고, 필요시 16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 사회봉사나 수상명령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은 보호관찰관과 월 1회 이상 접촉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으로부터 지도와 선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호관찰소는 전국에서 시 단위로 운영되는 관계로 청소년범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 전문상담가로부터 부모를 포함한 가정기반의 상담과 치료가 실시되고 학교적응이나 취업알선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지소를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상담기관, 학교, 노동관청과의 협조체계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관찰소 지소가 구 단위로 설치된다면 지역주민센터의 상담가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협조도 보다 수월해 짐으로써 청소년범죄자의 교화에 효율적일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보다 지역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더욱 필요하며, 더욱이 보호관찰 지소가 확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000년 현재 395명의 직원이 146,856명의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어 1인당 관리대상수가 373명에 이르러 미국의 76명, 일본의 45명, 영국의 23명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에 보호관찰소 본소 12개, 지소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서 구 단위로의 설치로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관찰 지역사회내 처우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 중에는 다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아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경중, 그리고 위험성에 따라 청소년들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또한 위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도 함께 병행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분류는 일반관리 대상자와 주요관리 대상자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집중보호관찰의 경우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 집중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상담치료,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법소년들이 사회에 방치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명단과 집, 학교를 확인하고 보호관찰관 및 자원봉

사자와 협력하여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데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처분의 청소년범죄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을 경우 사회봉사 또한 지역 내에서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때 지역내 종교기관을 그들의 선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봉사에 종교기관과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나 시설내 처우 청소년들에게 취업은 재범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듯이,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에 있어 직업교육과 취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이들에게 행정구청 노동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기업이 이들을 일시 취업하며, 일정 기술을 습득하면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내에서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은 전국 12개가 있고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교도소는 천안 및 김천에 2개소가 있다. 여기서는 시설내 처우의 현 운영실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시설내 처우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인지치료 등의 치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등이 강화되고 청소년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행히 현재 운영은 현대 여건에 맞는 컴퓨터관련 직업훈련과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소년원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는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내 처우는 가능한한 소수의 강력범 청소년들에게 국한하고 그 밖의 청소년범죄자들은 지역사회내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가시설보다는 지역사회내 시설을 이용하여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처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처우를 시행하게 될 때에는 비용이 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청소년선도 등 각종 활동

참여기관: 지역주민센터(주민)

종합적 연계 방안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범죄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민간자원봉사조직으로는 범죄예방위원과 보호소년지도위원이 있다. 범죄예방위원은 그 동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범죄자들의 선도업무를 맡아 왔던 소년선도위원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해 오던 보호선도위원이 통합되어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직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범죄예방위원은 전국 53개 지역협의회와 231개의 시, 군, 구 지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상담지도, 학교폭력, 취업알선, 의료지원, 기타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보조, 청소년범죄자들의 취업알선, 재정지원, 그밖에 학원폭력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 현재 18,03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소년선도위원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범죄자들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보호소년선도위원은 1998년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등 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17개의 기관별 협의회를 두어 방문지도위원, 종교지도위원, 원생어머니회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방문지도위원은 소년원생 및 퇴원생에 대해 취업알선, 결연, 진로상담, 정신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귀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종교지도위원은 심성순화를, 그리고 원생어머니회는 형편이 어려운 불우원생의 면회 및 진로, 인생상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방문지도위원이 1,173명, 종교지도위원 795명, 원생어머니회 598명 등 총 2,566명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로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들 수 있다.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주관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센터를 개설한 것을 시발로 하여 1999년 현재 전국 시,도의 12개 시민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해환경 상설고발창구의 운영, 현장순찰 활동반 구

성, 유해환경 감시모니터 활동, 그 밖의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12개 시민단체 이외에도 학교나, 그 밖의 시민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전국에서 940여개의 감시단, 총 2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파출소와 연계를 맺고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신문배달원, 환경미화원, 24시 편의점 종사자 등 86,357명의 범죄신고요원이 파출소별로 활동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국에서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총 41,600여명의 청소년선도반이 청소년선도, 가두캠페인, 심야청소년 귀가조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불우청소년들을 위문하거나 결연을 맺는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여가활동, 취업알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영역별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 운영조직, 단체가 다양하게, 또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91년 6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전국 시, 도 단위에 지역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를 단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키며, 필요한 부문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활동이 구 혹은 동 단위로 일원화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거나 동 단위의 지역주민센터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돕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일 때 자원봉사에의 참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V.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에 있어 경찰역할의 모색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 중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청소년범죄 대책을 위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주요 사법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사건절차와 처우에 관여하지만 특히 사법기관의 하나인 경찰은 사건처리 이외에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청소년범죄자들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방법과 소년계의 경찰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 된다. 소년계 경찰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우범 혹은 문제아들,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제공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방법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지역내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도 크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차원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계 경찰 이외에도 파출소 경찰의 역할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먼저 다뤄보기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비추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 전략 하에서의 경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 역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찰의 현 운영체계와 임무, 활동에 있어 잘 수행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청소년범죄를 다룸에 있어 앞으로의 경찰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다뤄보기로 한다.

1. 청소년범죄와 종합적 연계 전략에 있어 경찰의 역할

1) 청소년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은 사후적인 업무보다 사전적인 업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범죄가 발생할 때 범죄자를 체포, 수사하는 범집행자로서의 소극적인 임무가 아니라 범죄진압과 대응이 아닌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임무가 경찰의 주요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이처럼 사전적인 범죄예방에 관심을 둔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예방을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는 않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의 보다 근원이 되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이 범죄대응자가 아닌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는 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만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경찰과 지역주민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서 강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kolnick and Bayley, 1988; Trojanovitz and Bacqueroux, 1989; 노호래, 2001; 양문승,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스스로를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지역주민들과의 상호 친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를 포함한 제반 지역문제를 해결함을 추구하는 경찰활동이다. 즉 지역의 범죄문제 이외에 다양한 무질서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데에도 주목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의 무질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범죄의 근원이 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관심을 둔다(Goldstein, 1987, 1990; Sparrow et al., 1990). 결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지역무질서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범

죄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차원의 범죄기회를 차단하면서 범죄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특히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주요 요소로 하여 주민방범순찰이나 이웃감시, 지역무질서의 문제해결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Grinc, 1994; Rosenbaum et al., 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 경찰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여 의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즉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의 현안문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경찰의 활동은 통제와 지시가 아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된다.

또한 지역문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데, 따라서 지역주민과 접촉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친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활동으로 강조된다. 강압적인 경찰이 아닌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 신뢰감 있는 경찰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은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경찰의 일을 돕는 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이를 위해 경찰조직을 분권화하고, 파출소를 거점으로 하여 도보순찰과 가정심방을 실시하는 등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즉 중앙에서 명령을 받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경찰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찰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차량순찰이 아니라 도보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 접촉기회를 늘

리고, 또한 가정심방을 통해 지역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친근한 경찰상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강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을 촉진하고 이웃감시 등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지역의 무질서나 그 밖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인한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현재의 경찰활동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기관 중 경찰의 활동은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각 경찰서내 방법과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주요 부서이자 여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전대양, 1997). 그렇지만 여성청소년계 경찰 이외에 지역차원에서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치안의 활동도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파출소 외근경찰의 역할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범죄 예방과 관계되는 경찰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경찰백서, 2001).

파출소 순찰활동 및 주민방범대 구성

경찰은 파출소단위로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범죄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혹은 자율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등 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순찰활동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중 차량순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총 3,419개 조직에 9만 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율방범순찰활동이 동별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해환경 정화와 단속,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경찰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교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서적과 비디오 등 유해매체물, 유해약물이나 술, 담배를 판매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도에는 총 26,541건을 적발하여 1,028명을 구속하고, 27,3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렇지만 이는 전년 57,895건의 적발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적발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위반사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1999년도에 구속한 건수가 1,246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2000년도에는 보다 강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경찰은 전국 41개의 통행금지구역(윤락가 지역)과 26개의 통행제한구역(유형업소 밀집지역) 등 총 67개 지역을 설정하여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 혹은 제한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총 59개의 지역이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방법심방

경찰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지도, 계몽하고, 청소년선도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은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행정기관,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계가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학원폭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0년 총 3,28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단체는 19,846개, 총 36,243명이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의회 운영은 1999년에 비해 다소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운영은 지방청이나 경찰서별 운영 이외에 파출소별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기반 범죄예방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 중, 고등학교에 여자경찰관 및 수사형사 위주로 학교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지도교사와 협조하여 청소년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내 불량서클의 실태도 파악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 4,742개 중고등학교 중 4,647개의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1999년도 비해 그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명예경찰운영

경찰은 명예경찰 포들이, 포순이 소년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며 경찰과의 접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10월 서울지방청 명예경찰 소년단이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2월 현재 10,230학교 중 7,478학교에서 실시하여 43,791명의 명예경찰이 활동 중에 있다.

명예경찰 운영은 청소년선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태권도, 유도 등 무도활동과 학교폭력을 신고토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 교통캠페인 등 질서운동, 불우학생 도와주기, 경찰서 방문 및 견학, 112순찰 및 도보순찰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선도활동

경찰은 각 경찰관서나 청소년선도단체에 청소년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

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면접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해 주고 있다. 2000년도에는 18,826건의 상담을 했는데, 1997년도의 12,431건, 1998년도의 15,042건, 1999년도 15,989건의 상담실적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또한 한국 BBS연맹과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청소년범죄자나 불량청소년 등을 위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87회의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고, 참가 청소년들은 9,598명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가출청소년이 배회하는 역, 터미널 등에 경찰관과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440명의 여성복지상담원을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결연활동

경찰은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1가정 1청소년 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6,273명의 불우청소년과 회원들간의 결연을 맺는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

경찰은 시민경찰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경찰의 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경찰관들의 강의와 현장경험, 치안실태를 듣고, 경찰관과 함께 지역범죄예방에 관해 토의하며, 파출소, 112신고센터, 단속현장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2000년 10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여 201명의 시민들이 시민명예경찰이 되어 청소년선도 캠페인,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단속, 거리질서 확립 등의 치안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파출소 체험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파출소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협력치안의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긍정적 경찰상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파출소 현장체험 활동은 소내근무 2시간, 도보순찰 1시간, 112순찰 1시간 등 총 4시간 동안 파출소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치안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시민 397,564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내신반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파출소 현장체험을 통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94,138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파출소 체험활동에 참여하였다.

지역방법세미나, 공청회 개최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찰개혁과 지역방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지방경찰청별로 개최하며 경찰개혁 추진사항 소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지역치안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별로는 년 4회 분기별로 방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치안활동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정기공청회가 3,178회, 범죄취약지에서의 길거리 공청회가 9,251회 실시되었다.

또한 경찰은 경찰서별로 경찰행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림엽서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법리콜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1,600,000개를 배포하여 23,250개(1.5%)의 그림엽서가 회신되었다.

대민봉사활동

경찰은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0년 10월 9일 각 지방경찰청별로 112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각 경찰청별로 1개대에 의경 및 경찰 30여명을 편성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친숙해 지고 봉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도 말까지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 228회 봉사활동을 실

시하였고 4,185명의 경찰이 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전, 의경이 주축이 되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경찰서 회의실이 나 파출소 휴게실을 이용한 포돌이 공부방을 통해 영어, 수학 컴퓨터 등을 가르쳐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하고 친근한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불우시설 위문방문이나 시민공연, 수해복구나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봉사를 하는 경찰상을 홍보를 하고 있다.

3)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전략에 비추어 본 경찰의 역할

여기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종합적 연계 전략을 상정할 때 앞으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협력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청소년들의 범죄욕구를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순찰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경찰의 인력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순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주민의 협력을 유도해 주민방범순찰을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파출소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 순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직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웃감시와 같은 지역주민들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찰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일깨우고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역의 무질서나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센터와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모임을 갖고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지역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내에 버려진 폐차, 폐기물, 건축자재, 쓰레기 문제,

담장, 벽의 불법 홍보물과 낙서, 무질서한 주차, 어두운 조명 등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면 지역주민 혹은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무질서한 모습을 정돈하거나 어두운 곳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유해업소의 단속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주택가나 학원가에 적어도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유흥업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역주민들, 학교선생들과 함께 단속하고 선도하며, 유해업소 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가하지 말도록 계몽하고 또한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엄중히 경고, 처벌하도록 한다.

가정심방

지역경찰이 관할 지역내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는 가정심방활동은 강조되어야 할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된 내용이 지역주민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면 파출소 경찰은 지역내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를 듣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감으로써 봉사하며,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친근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심방을 하는 과정에서 불우가정과 문제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 문제가정과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될 경우는 지역주민센터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여 문제가정과 아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파출소 경찰의 주요 역할의 하나가 가정심방임에도 인력의 부족으로 가정심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학교방문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관할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는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범죄예방교실의 운영은 미비하며, 또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강연을 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학생들과 친근하게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학생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학교선생이나 상담교사와 접촉하여 문제성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집단 등에 가입한 청소년들의 명단을 확보하면서 문제아이나 혹은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아이들을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상담가에 연계지움으로써 상담과 치료를 통해 사전에 선도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선도

경찰은 순찰, 보도활동, 가정방문, 학교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아이나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불량서클이나 범죄집단 등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한다. 경찰은 우범소년, 지위비행을 한 불량소년, 그리고 경미한 형사사건의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하면 이들 청소년들이 선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상담가에 연계지움으로써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보호사건의 청소년들을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선도되도록 하고 있는데, 선도내용이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범죄자들을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치료대상에 포함시키는 적극적 개입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불우하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그리고 범죄집단의 아이들

에게 특히 취업은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구청 노동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¹⁵⁾

지역청소년들과의 자매 결연

청소년범죄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되고 애정에 목마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경찰 등과 결연을 맺어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선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청소년범죄자들은 위험한 아이라는 인식이 있어 일반 주민들이 그들과 결연을 맺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불우하고 빈곤하며 문제성향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도록 적극 장려하고,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혹은 경찰이 직접 그들과 결연을 맺어 그들이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⁶⁾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감독

아울러 경찰은 보호관찰대상의 청소년범죄자들을 보호관찰기관과 협력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보호관찰대상의 아이들이 사회내에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사회방위차원에서 그들의 행동은 감독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보호관찰관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우범청소년,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이외에 보호관찰대상의 청소년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보호관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5) 1992년에 미국 워싱턴 스포케인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기회 프로그램(Community Opportunities Program for Youth)(Thurman et al., 1993)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들이 1주에 한번씩 만나 주변 직장과 연계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6)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Juvenile Mentoring Program(JUMP))은 경찰의 주도하에 청소년들과 시민을 1대 1로 자매 결연을 맺게 하여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청소년들에게 일정 역할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며, 오하이오주의 톨레도에서 있었던 혁신적인 경찰 멘토링 프로그램(Innovative Police Mentoring Program)도 대표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Grossman and Garry, 1997).

2. 향후 경찰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파출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제해결과 치안협력화

지역단위의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파출소는 소지역별로 순찰, 방범심방, 주민자율방법대의 운영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행하는 핵심적 기관이다. 경찰활동의 중심이 범죄대응과 수사에서 사전 범죄예방의 형태로 진행되는 추세에서 보면 파출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이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범죄 예방에는 또한 지역기반의 운영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전략이중요하다는 점에서 파출소는 범죄예방의 중추적 기관이며 파출소의 운영은 청소년 범죄 예방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출소는 도보순찰 등을 통해 지역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게 하는 지역치안의 주요 거점이 된다. 순찰은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능도 있지만, 순찰을 통해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다가가 봉사하고 위안을 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순찰방법 중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도보순찰이 선호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내용이 된다.

아울러 파출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치안 및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창구이기도 하다. 즉 파출소는 순찰 등의 직접적인 범죄예방활동 이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무질서나 각종 지역문제의 해결, 그리고 지역주민과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찰의 방범심방도 범죄예방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 주민들의 관심사항과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 강조된다.

파출소는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치안체제를 확립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범죄 예방이나 각종 범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이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경찰의 임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파출소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파출소 경찰은 도보순찰, 대민봉사와 가정심방, 그리고 지역주민의 치안협력에 관한 업무가 최우선의 업무가 된다(이윤근, 2000). 그러나 기존의 파출소 운영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었던 부분은 규제, 단속중심의 업무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파출소가 작은 경찰서로 불리듯이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었다. 파출소 경찰들은 경찰서의 각 기능을 처리하는 각종 업무 이외에 단속과 조사, 행정업무로 본연의 업무인 순찰이나 대민봉사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획일적인 경찰서 지시의 업무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파출소가 일반적인 경찰업무가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주민과의 접촉, 도보순찰, 그리고 주민방범순찰이나 이웃감시의 조직화 등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을 최우선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파출소의 경찰은 규제, 단속업무를 경찰서의 업무로 이전하고 지역의 삶의 질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최일선의 대민봉사의 창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대단위 파출소의 운영, 치안서비스 센터화의 방안 등 여러 차례 시범운영을 시험하여 왔다. 이는 규제업무중심에서 파출소를 협력치안 혹은 치안서비스 센터화하여 주민고충상담, 자율방범대 조직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파출소를 대민봉사의 창구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파출소 경찰의 주요 업무인 순찰업무를 경찰서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찰의 순찰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보순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고안된 것으로, 즉 적은 경찰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출소를 통폐합하고 경찰서를 중심으로 112순찰차량을 통해 여러 파출소관할을 통합하는 보다 광범위한 순찰을 꾀하였고 지역순찰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방범순찰로 보완하고자 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운영은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파출소에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찰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파출소의 통폐합으로 파출소가 폐지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 창구가 없어지고 범죄의 두려움의 증가와 범죄피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부합되지 않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또한 대단위파출소운영이 이루어질 때 순찰은 도보순찰의 형태가 아니라 경찰서중심의 차량순찰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경찰과 지역주민들간의

접촉의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협력치안의 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파출소의 운영에 있어서 순찰업무를 경찰서로 이양하기보다는 파출소 경찰의 도보순찰은 오히려 인력을 늘려서라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파출소의 주요 업무가 순찰을 통한 범죄기회의 차단과 범죄예방 이외에 대민접촉과 봉사, 그리고 가정심방 등을 통한 지역문제의 발견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보순찰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도보를 통한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접촉과 대민봉사, 가정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출소 경찰의 대민봉사 업무는 파출소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등 주민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경찰활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보순찰의 강화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 봉사하고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찰업무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역의 문제는 보다 더 잘 파악되고 해결될 수 있다.

주민들과의 접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파출소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방범공청회도 현재 경찰서단위에서 파출소단위로 바꾸고 수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과 더욱 접촉을 하게 되고 차후 주민들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이나 이웃감시 등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파출소중심의 도보순찰과 주민과의 접촉을 위한 활동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경찰서관할의 대단위 순찰방안은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정착화된 후에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물론 도보순찰과 동시에 경찰서별로 112순찰 차량을 이용한 순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보순찰과정에서 사건에 접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은 즉시 차량순찰에 연락하여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출소 경찰은 범죄사건의 대응보다는 신속한 연락의 체계를 통해 사건이 경찰서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주 임무를 도보순찰과 가정방문, 대민봉사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 최근의 이성식(2001b)의 연구에 따르면 순찰 이외에 파출소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은 범죄로부터 크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해 파출소의 통폐합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주장했다.

도보순찰, 주민접촉, 가정심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예산상 많은 인원의 충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파출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파출소를 통폐합하기보다는 현 파출소의 수를 유지하면서 치안수요에 맞게 인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파출소는 치안문제해결 이외에 대민봉사의 창구라는 점에서 통폐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력부족의 문제는 파출소의 대단위화가 아니라 인구규모나 우범지역 여하에 따른 인원분배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경찰순찰의 범죄예방효과는 어느 지역에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율이 높은 우범지역에서 그 효과가 특히 크다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한다면 도보순찰은 우범지역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파출소 관할별로 범죄통계분석이 이루어져 어떠한 지역이 우범지역인지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범죄발생의 분석이 이루어져 우범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 지역문제와 범죄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치안형태의 기반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윤근, 2000).

2) 지역의 조직화와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범죄예방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찰은 지역주민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경찰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듯이 파출소 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봉사함으로써 친근한 경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지역에 봉사하고 친근하고 신뢰감이 가는 경찰이 전제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은 경찰을 돕는 데에 적극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도보순찰과 가정심방은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 운영, 주민 파출소 체험, 지역방법공청회 등 각종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여건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아울러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주민들의 방법순찰에의 참여가 물질적, 시간적 부담, 혹은 위험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한다면 물질적 보상이나 사고시 보상체계 등 각종 유인체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민방법순찰의 경우 야식비나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경력인정, 표창 등의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방법순찰 참여자에게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여주거나 대체해 주고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을 방법순찰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주는 보상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보상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성원들의 책임의식이 전제되고 확산될 때에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지역주민들간의 모임과 접촉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유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주민들간의 접촉기회가 많아야 하고, 또한 친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공원이나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파출소 또는 경찰서가 지역주민 노래자랑, 운동회, 연극초청공연, 경로잔치 등을 기업의 후원으로 적극 개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 모임의 활성화, 유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이웃의 소단위로 조직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최인섭, 진수명, 1995; 이성식, 2001c).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동별로 지역주민센터의 설립과 지역의 조직화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단위별로 지역내에 지역주민들이 모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의 접촉과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공감대와 친분이 형성되며 나아가서는 조직체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시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지역노인정의 활용이나 임시가건물의 신축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확보로 일정 상가내에 지역주민센터와 같은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상회 모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경찰은 언론이나 지역신문지를 이용하거나 반상회 등이 있을 때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과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의 해결과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조직체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에 주민들의 조직체가 점차 형성되면 경찰은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웃감시 등 외국의 성공사례를 알려주거나 혹은 지역내 우범지역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방범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조직체의 활동에서 정부나 경찰의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조직체는 정부나 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경찰이 조직체를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고 책임자 선발, 교육, 감독 등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주민조직체는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경우 지역성원들의 욕구 반영이 미흡하고 자율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나친 간섭이 있으므로 해서 조직의 활성화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해업소의 단속강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모색 등 유익한 환경의 조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청소년들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업소에 대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그리고 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위반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업소를 상대로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계몽활동을 펼치는 노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계 경찰 중 유해환경 담당 경찰관은 행정기관 담당자나 지역선도위원,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주거지역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업소를 청소년 주변환경으로부터 이전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류중석, 2000). 즉 유해업소들을 점차로 특정 지역으로 이전시켜 집중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유해

업소를 특정 지역에 집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유해업소 감시자가 되어 위반 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체없이 신고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들을 단속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유해업소 신고자에게 보상금제도를 두어 위반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유해업소의 유해성과 청소년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사회 등의 모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경찰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속방안보다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여가활동 개발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고,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학교방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유익성과 이용가능한 시설을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Jamieson et al., 2000).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전시회, 연극 등의 행사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최하고 지역청소년들과 축구경기 등 건전한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청소년선도에 있어 팀운영의 연계 체계의 강화

경찰은 여러 기관과 연계하는 팀위주의 활동을 통해 문제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도받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은 순찰, 보도활동, 가정방문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지만 학교와의 연계 체계하에 학교방문, 혹은 학교와 정보교환을 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불량서클이나 범죄집단 등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은 학교와의 연계 체계를 갖거나, 혹은 학교담당경찰관을 두어 문제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들의 선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경찰과 학교와의 연계

체계는 보다 크게 강화해야 할 활동 부분이 된다(박세정, 1998).

경찰은 또한 문제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의 선도에 있어 지역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며 지역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범죄 예방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주민센터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가,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과 그들 부모가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기관이 지역사회내에 동별로 설치되어 일원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킴으로써 지역주민센터내의 청소년상담실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상담실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아울러 문제아들이나 청소년범죄자를 발견할 경우 지역사회내에서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문제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 청소년들을 선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선도와 상담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나 그 밖에 종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선도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센터에서의 상담과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범죄자들의 선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해 노동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청소년선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이가 든 청소년범죄자들을 위해서는 취업이 재범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은 청소년범죄자들이 직업기술을 익히고 또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내에서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의 감독과 선도에 있어서도 경찰은 보호관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계하여 함께 청소년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아울러 담당할 필요가 있다(Guarino-Ghezzi, 1994). 보호관찰기관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의 명단을 주소지별로 관할 파출소에 전달하면 파출소 경찰은 지역순찰 혹은 가정심방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행동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연계 프로그램에서 학교를 방문하게 될 때에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행동을 파악, 관리하여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 연계하여 도움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과의 관계 개선과 자매결연, 범죄예방활동에의 청소년 활용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경찰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청소년범죄 예방에는 크게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지역경찰과 친근한 아는 사이가 될 때 문제행동과 범죄의 의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며, 또한 모범적이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경찰관 친근 프로그램(Officer Friendly Program)은 경찰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바람직한 시민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어려서부터 학생들과 경찰간에 친밀함을 증진시키려 한 것이었으며, 경찰-학교 연계프로그램(Police-School Liaison Program)도 경찰과 학교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경찰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가감으로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찰과 청소년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경찰이 지역청소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등의 경찰체육리그(Police Athletic League) 프로그램도 지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청소년들이 운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감을 가지며 또한 범죄기회를 줄이고자 여가활동을 제공하려 했던 목적에서 시행되었던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교담당경찰제는 경찰과 청소년들과의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담당경찰관의 주요 활동으로 되어 있는 문제청소년들의 관리, 학원폭력의 감시, 학교내 불량서클의 파악 이외에 경찰관은 강좌나 운동경기에서의 참여 등 일반 학생들과도 친근하게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담당경찰관은 학교선생님과의 접촉을 통해 불우한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과 직접 자매결연을 맺거나 지역주민들 혹은 다른 학부모와 결연을 맺도록 주선하는 등 범죄예방활동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들을 범죄예방활동이나 경찰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각종 경찰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기초질서 의식을 갖게 되고 경찰의 노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예방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외국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전대양, 1997). 뉴욕 로체스터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청소년 순찰 프로그램(Teens on Patrol(TOP) Program)은 그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공원 등을 중심으로 순찰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동원된 일부 청소년들은 차후 경찰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경찰업무 보조 프로그램(Youth-Cop Program)은 청소년들에게 미아찾기, 교통정리, 그밖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명예경찰 소년단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생들로 구성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명예경찰제는 파출소 방문, 견학, 순찰현장 체험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경찰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범순찰이나 방과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극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중, 고등학생의 내신 반영을 위한 봉사활동에 파출소 현장 체험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더욱 홍보하여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문제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을 경찰순찰이나 경찰업무 보조에 활용할 때 그들이 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들이 보호관찰처분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받게 되는 경우 순찰 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범죄자의 다이버전 확대와 수사권 독립

적어도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경찰선에서 사건 초기상에 해결되어 가정에 보내지고 사

회복지사나 상담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선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이버전의 조치로 지역사회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선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낙인의 오명으로 더욱 심각한 청소년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대양, 1997).

청소년범죄자로 다뤄지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사법대상이 아니라 사회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년법상에서는 우범청소년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청소년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문제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들이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위비행의 청소년들도 사회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범청소년이나 지위비행의 불량 청소년들은 잠정적인 위험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부모에 인계하고 사회복지사나 상담가 혹은 자원봉사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관심을 갖고 비공식적으로 선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행히 현 운영상에는 소년법에 그러한 청소년들이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청소년이나 지위비행의 불량청소년의 경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인계되어 훈방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강좌프로그램보다는 부모도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사건절차를 밟지 않고 사법기관의 개입 없이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처우되어야 할 청소년은 우범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 이외에도 경미한 형사사건의 청소년들도 있다. 사소한 절도나 매춘을 한 청소년들이 초범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 경찰선에서 사건 초기상에 사회내의 선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실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에 의해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이유도 경미한 청소년범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다이버전의 일환에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선이 아닌 경찰선에서 선도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사건부담을 덜고 비용을 절감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소년법원에 송치되어 결국 보호자에 인계되는 1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여러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면에서 낭비이고 청소년 개인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해당 청소년들이 사건초기의 절차에서 비공식적으로 선도되어야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호사건의 80% 정도의 청소년들이 1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경찰선에서 사건 초기상에 다이버전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낙인 방지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에는 12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법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책임능력이 없어 그들을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물론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려서 조기에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상습적이고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하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6-7세로 하한 연령을 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고 어린 소년범들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옳은 방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아이들을 위험아이들로 분류하여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나 상담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범소년, 불량소년, 그리고 경미한 형사사건의 청소년범죄자들은 이처럼 경찰선에서 다이버전의 조치를 받음으로써 비공식적으로 선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청소년들의 분류가 사건초기의 경찰선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찰은 우범소년이나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할 경우 과학적으로 그들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다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범죄자들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그 외의 위험성이 낮고 경미한 사건의 청소년인 경우는 자체의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비공식적으로 적절히 선도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소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과 판단 여지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원인들을 파악하고 원인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성향, 가정, 학교, 친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요인들을 다루는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적 대처 노력은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범죄가능성이 높은 위험청소년,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대처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기 예방은 중요하여 어린 시기 때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고 또한 대처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문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복지기관, 경찰, 행정기관, 기업, 종교기관 등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서로 협조하면서 참여하는 종합적 연계 방안이 요구된다. 즉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범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청소년들을 위해 적절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조기에 학교에서의 강좌를 통한 인지훈련이,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양육방법을 교육시키는 훈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제아이들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 인지능력, 화조절 등을 위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고, 그 부모도 대상에 포함시켜 부모관리훈련이나 가족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비행친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들을 위해서도 위험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보다는 지역사회기반의 처우가 보다 강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들에게는 직업교육과 취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범죄 대책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사회의 환경도 개선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아울러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환경의 개선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시차원의 노력도 이루

어져야 한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처로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순찰, 이웃감시, 지역무질서 해결, 유해환경 정화, 그리고 지역유대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조직체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연계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는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운영의 중심이 되어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부기관보다는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 조직체가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 주민들의 주도하에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구하는 것이 기관간의 갈등없이 여러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된다. 더욱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비공식적 통제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상 동별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주민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조직체가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기관이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 연계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논의하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경찰은 그 동안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였으며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경찰이 모든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되며 역할은 분담이 되어야 하고 경찰의 역할은 종합적 연계 전략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경찰의 주요 역할이다.

첫째, 경찰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의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방법순찰, 이웃감시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은 순찰과 가정심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친근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학교방문을 통해 지역청소년들과도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경찰은 순찰, 혹은 가정방문이나 학교방문을 통해 위험청소년과 청소년범죄자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지역주민센터의 상담가나 사회복지사에 인계하여 선도와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한다. 넷째, 경찰은 지역내 불우한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결연을

맷도록 주선하고 청소년범죄자들과는 직접 결연을 맷도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범죄자들이 취업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은 구청 노동부서 및 기업과 연계하여 그들의 취업을 돕도록 한다. 여섯째, 경찰은 또한 보호관찰기관과 연계하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선도 이외에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맞는다. 일곱째, 경찰은 또한 적어도 청소년범죄 부문에서는 수사권독립을 이루어 다이버전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범죄자들의 낙인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선도를 받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종합적 연계 전략을 제시하고 그러한 연계 체계내에서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력을 통한 치안활동,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 등 최근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경찰의 역할과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를 보다 갖추으로써 청소년범죄 대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잠정적인 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진정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경험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연구를 통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합적 연계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그 효과 이외에도 소요되는 예산과 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나은 정책 제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경찰백서, 2001. 2001 경찰백서, 경찰청.
- 김문조, 이성식, 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 민족문화연구 27호: 181-216.
- 김준호,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 창간호: 113-48.
- 김준호, 노성호, 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25호: 109-41.
- 김준호, 박정선, 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성식, 1997.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28호: 97-120.
- 노호래,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1호: 139-78.
- 류중석, 2000. 청소년유해성인업소 집중화방안, 제1차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정책 포럼,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세정, 1998.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호: 216-58.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양문승(역),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21세기의 경찰활동 전략, 대영문화사.
- 엄명용, 1999. 청소년비행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소년보호연구 창간호: 155-84.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37호: 193-221.
- 이성식, 2000. 청소년범죄의 동기로서 재미와 스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호: 53-80.
- 이성식, 2001a.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 교정연구 12호: 235-62.
- 이성식, 2001b.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13권 1호: 165-92.
- 이성식, 2001c. 지역주민 방법순찰활동의 참여 요인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경험연구, 형

사정책연구 47호: 111-37.

이윤근, 2000. 경찰순찰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호: 149-94.

전대양, 1996. 한국 소년경찰의 활성화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호: 36-74.

조은경, 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0호: 125-78.

최인섭, 진수명, 1995.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외문헌>

Alexander, J.F., A. Holtzworth-Munroe, and P.B. Jameson. 1994. The Process and Outcome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Research: Review and Evaluation. In A.E.Bergin and S.L. Garfield(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4th ed.). New York: Wiley.

Andrews, D.A., and J. Bonta.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Andrews, D.A., I. Zinger, R.D. Hoge, J. Bonta, P. Gendreau, and F.T. Cullen. 1990. Does Correctional Treatment Work? A Psychologically Informed Meta-Analysis. Criminology 28: 369-404.

Aos, S., R. Barnoski, and R. Lieb. 1998. Preventive Programs for Young Offenders Effective and Cost-Effective. Overcrowded Times 9(2): 7-11.

Arnette, J. and M. Walsleben. 1998. Combating Fear and Restoring Safety in School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Baron, R. and F. Feeney. 1976. Juvenile Diversion Through Family Counseling.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arton, W.H., and J.A. Butts. 1990. Viable Options: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Crime and Delinquency 36: 238-256.

Battistich, V., E. Schaps, M. Watson, and D. Solomon. 1996. Prevention Effects of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Early Findings from an Ongoing Multi-Site Demonstration Tria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1: 12-35.

Beirman, K.L., M.T. Greenberg, and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6. Social Skills Training in the Fast Track Program. In R.D. Peters and R.J. McMahon(Eds.), *Preventing Childhood Disorders,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Thousand Oaks, CA: Sage.
- Bilckik, S. 1998. A Juvenile Justice System for the 21st-Century. *Crime and Delinquency* 44: 89-101.
- Blagg, H., G. Pearson, A. Sampson, D. Smith, and P. Stubbs. 1988. Inter-agency Coordination. In T. Hope and M. Shaw(Eds.), *Communities and Crime Reduction*. London, HMSO.
- Botvin, G.J., E. Baker, N.L. Renick, A.D. Filazzola, and E.M. Botvin. 1984. A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 to Substance Abuse Prevention. *Addictive Behaviors* 9: 137-147.
- Brantingham, P.J. and P.L. Brantingham. 1993. *Environmental Criminology*. Prospect Heights, Ill: Waveland Press.
- Bretherton, D., L. Collins, and C. Ferretti. 1993. Dealing with Conflict: Assessment of a Course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Australian Psychologist* 28: 105-111.
- Brewer, D.D., J.D. Hawkins, R.F. Catalano, and H.J. Neckerman. 1995. Preventing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ing: A Review of Evaluations of Selected Strategies in Childhood, Adolescence, and the Community. In J.C. Howell, B. Krisberg, J.D. Hawkins, and J.J. Wilson(Eds.),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Thousand Oaks, CA: Sage.
- Bursik, R.J. and H.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attarello, A.M. 2000. Community-level Influences on Individuals' Social Bonds, Peer Associations, and Delinquency: A Multilevel Analysis. *Justice Quarterly* 17(2): 33-60.
- Cernkovich, S. and P.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ohen, L.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24.
- Crawford, A. 1994. The Partnership Approach to Community Crime Prevention. *Social and Legal Studies* 3: 497-519.
- Davidson, W.S., R. Redner, C.H. Blakely, C. Mitchell, and J. Emshof 1987. Diversion of Juvenile Offenders: An Experimental Comparis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68-75.
- Dishion, T.J., and D.W. Andrews.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 139-151.
- Dishion, T.J., and G.R. Patterson. 1992. Age Effects in Parent Training Outcome. *Behavior Therapy* 23: 719-729.
- Dishion, T.J., G.R. Patterson, and K.A. Kavanagh. 1992. An Experimental Test of the Coercion Model: Linking Theory,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In J. McCord and R.E. Tremblay(Eds.),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Interventions from Birth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Guilford.
- Dodge, K.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s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559-584.
- Dolan, L.J., S.G. Kellam, C.H. Brown, L. Werthamer-Larsson, G.W. Rebok, L.S. Mayer, J. Laudolff, J.S. Turkkan, C. Ford, and L. Wheeler. 1993. The Short-Term Impact of Two Classroom-Based Preventive Interventions on Aggressive and Shy Behaviors and Poor Achiev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17-345.
- Duchnowski, A.J., and K. Kutash. 1996. A Mental Health Perspective. In C.M. Nelson, R.B. Rutherford, and B.I. Wolford(Eds.), *Comprehensive and Collaborative Systems that Work for Troubled Youth: A National Agenda*. Richmond: Eastern Kentucky University.
- Elliott, D.S., D. Huizinga, and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Elliott, D.S. and S. Menard.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In J.D. Hawkins(Ed), *Delinquency and Cr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ott, D.S., W.J. Wilson, D. Huizinga, R.J. Sampson, A. Elliott and B. Rankin. 1996. The Effects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4): 389-426.
- Esbensen, F.A., and D.W. Osgood. 1997. National Evaluation of G.R.E.A.T. Research in Brief.(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Fagan, J.A. 1990. Treatment and Reintegration of Violent Juvenile Offenders: Experimental Results. *Justice Quarterly* 7: 233-263.
- Farrell, A.D., and A.L. Meyer. 1997.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Curriculum for Reducing Violence among Urban Sixth-Grad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979-984.
- Farrington, D.P. 1996. The Explanation and Prevention of Youthful Offending. In J.D. Hawkins(Eds.),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ner, R.D., S. Brand, A.M. Adan, P.F. Mulhall, N. Flowers, and B. Sartain. 1993. Restructuring the Ecology of the School as an Approach to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Longitudinal Follow-Ups and Extensions of the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STEP).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10: 103-136.
- Galaway, B., R.W. Nutter, J. Hudson, and M. Hill. 1995. Specialist Foster Family Care for Delinquent Youth. *Federal Probation* 59: 19-27.
- Goldstein, A.P., B. Glick, and J.C. Gibbs. 1998.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Youth*(rev. ed.).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Goldstein, H. 1990. *Problem-oriented Policing*.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D.C. 1986. An Empirical Test of School-Based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to Reduce the Risk of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24: 705-731.
- Gottfredson, D.C. 1990. Changing School Structures to Benefit High-Risk Youths. In P.E. Leone(Eds.), *Understanding Troubled and Troubling Yout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T., C.A. Kusche, E.T. Cook, and J.P. Quamma. 1995. Promoting Emotional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The Effects of the PATHS Curriculu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117-136.
- Greenberg, S.W., W.M. Rohe, and J.R. Williams. 1982. *Safe and Secure Neighborhood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Greenberg, S.W., W.M. Rohe, and J.R. Williams. 1985. *Informal Citizen Action and Crime Prevention at the Neighborhood Level*.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Greenwood, P., and S. Turner. 1987. *The VisionQuest Program: An Evaluatio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Grinc, R.M. 1994. Angels in Marble: Problems in Stimulating Community Involvement in Community Policing. *Crime and Delinquency* 40: 437-68.
- Grossman, D.C., H.J. Neckerman, T. Koepsell, K. Asher, P.Y. Liu, K. Beland, K. Frey, and F.P. Rivara. 1997.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7: 1605-1611.
- Grossman, J. and E. Garry. 1997. *Mentoring: A Proven Delinquency Prevention Strategy*. Washington, DC: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 Guarino-Ghezzi, S. 1994. Reintegrative Police Surveillance of Juvenile Offenders. *Crime and Delinquency* 40: 131-52.
- Guerra, N.G., L.D. Eron, L.R. Huesmann, P.H. Tolan, and R. Van Acker. 1997.

- A Cognitive/Ecological Approach to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Violence and Aggression in Inner-City Youth. In D.P. Fry and K. Bjorkquist(Eds.), *Cultural Variation in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s to Violen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mmond, W.R., and B.R. Yung. 1991. Preventing Violence in At-Risk African-American Youth.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 359-373.
- Hare, R.D. 1991. *Th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Ontario: MHS Publishing.
- Hawkins, J.D. and D.L. Lishner. 1987. Schooling and Delinquency. In E.H. Johnson(ed), *Handbook on Crime and Delinquency Preven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Hawkins, J.D., H.J. Doueck, and D.M. Lishner. 1988. Changing Teaching Practices in Mainstream Classrooms to Improve Bonding and Behavior of Low Achiever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 31-50.
- Hawkins, J.D., Herrenkohl, D.P. Ferrington, D. Brewer, R.F. Catalano, and T.W. Harachi. 1998. A Review of the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R. Loeber and D.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Hawkins, J.D., M.W. Arthur, and J.J. Olson. 1997. Community Intervention to reduce Risks and enhance Protection against Antisocial Behavior. In D.M. Stoff, J. Breiling, and J.D. Maser(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Wiley.
- Hawkins, J.D., R. Catalano, D. Morrison, J. O'Donnell, R. Abbott, and L.E. Day. 1992.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In J. McCord and R. Tremblay(Eds),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Guilford.
- Hawkins, J.D., and R.F. Catalano. 1992. *Communities That Car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nggeler, S.W., G.B. Melton, M.J. Brondino, D.G. Scherer, and J.H. Hanley. 1997. Multisystemic Therapy with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Families: The Role of Treatment Fidelity in Successful Dissemin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821-833.
- Henggeler, S.W., G.B. Melton, and L.A. Smith. 1992. Family Preservation Using Multisystemic Therapy: An Effective Alternative to Incarcerati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953-961.
- Henggeler, S.W., G.B. Melton, L.A. Smith, S.K. Schoenwald, and J.H. Hanley. 1993. Family Preservation Using Multisystemic Therapy: Long-Term Follow-Up to a Clinical Trial with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 283-293.
- Hirschi, T. and M. Hindelang. 1977.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471-86.
- Hollin, C.R. 1990.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with Young Offenders*. New York: Pergamon.
- Hollin, C.R. K.J. Epps, and D.J. Kendrick. 1995. *Managing Behavioral Treatment: Policy and Practice with Delinquent Adolescents*. London: Routledge.
- Hope, T. 1995. Community Crime Prevention. In M. Tonry and D.P. Farrington, *Crime and Justice(Vol 19), Building a Safer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well, J.C.(Eds.).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owitt, P.S., and E.A. Moore. 1991. The Efficacy of Intensive Early Intervention: An Evaluation of the Oakland County Probate Court Early Offender Program.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42: 25-36.
- Jamieson, L.M., A Suren, and J. Knapp. 2000. A Competency Analysis of Law

- Enforcement Training and Its Linkage to Recreation as Intervention in Youth Crime Preven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 215-26.
-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M.B., and D.R. Offord. 1989. Reduction of Antisocial Behavior in Poor Children by Nonschool Skill-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0: 737-750.
- Kazdin, A.E. 1997. A Model for Developing Effective Treatments: Progression and Interplay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114-129.
- Kazdin, A.E. 1997b. Parent Management Training: Evidence, Outcomes, and Issu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349-1356.
- Kazdin, A.E., D. Bass, T. Siegel, and C. Thomas. 1989.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Referred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22-535.
- Kazdin, A.E., T.C. Siegel, and D. Bass. 1992.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33-747.
- Kellam, S.G., and G.W. Rebok. 1992. Building Developmental and Etiological Theory through Epidemiologically 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Trials. In J. McCord and R.E. Tremblay(Eds.),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Interventions from Birth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NY: Guilford.
- Kellam, S.G., G.W. Rebok, N. Ialongo, and L.S. Mayer. 1994. The Course and Malle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 from Early First Grade into Middle School: Results of a Developmental Epidemiologically-Based Preventive Tria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259-281.

- Kelling, G.L., A.M. Rocheleau, D.P. Rosenbaum, J.A. Roth, W.G. Skogan, and N. Walsh. 1997. Preliminary Cross-site Analysis of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Comprehensive Communities Program. Cambridge, MA: Botec Analysis Corporation.
- Kirigin K.A., C.J. Braukmann, J. Atwater, and M.M. Wolf. 1982. An Evaluation of Teaching-Family(Achievement Place) Group Homes for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5: 1-16.
- Klein, M.W. 1993. Attempting Gang Control by Suppression. In M.W. Klein, C.L. Maxson, and J. Miller(Eds.), *The Modern Gang Reader*. Los Angeles: Roxbury.
- Lab, S.P. 1992.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 and Evaluations*. Anderson Publishing Company.
- Klein, N.C., J.F. Alexander, and B.V. Parsons. 1977. Impact of Family Systems Intervention on Recidivism and Sibling Delinquency: A model of Primary Prevention and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469-474.
- Krisberg, B., and J.C. Howell. 1998. The Impact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Prospects for Graduated Sanctions in a Comprehensive Strategy. In R. Loeber and D.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Lally, J.R., P.L. Mangione, and A.S. Honig. 1988. The Syracuse University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ject: Long-range Impact of an Early Intervention with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y. In E.R. Powell(Eds.), *Annual Advances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Parent Education a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Emarging Direction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orwood, NJ: Ablex.
- Land, K., P. McCall, and J. Williams. 1992. Intensive Supervision in Status Offenders. In J. McCord and R. Tremblay(Eds.), *Preventing Antisocial*

- Behavior: Interventions from Birth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rson, J.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101-117.
- Lindstrom, P. 1996. Partnership in Crime Prevention: Police-School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Chicago.
- Lipsey, M.W. 1992. Juvenile Delinquency Treatment: A Meta-Analytic Inquiry in the Variability of Effects. In T.D. Cook, H. Cooper, D.S. Cordray, H. Hartmann, L.V. Hedges, R.J. Light, T.A. Louis, and F. Mosteller(Eds.), *Meta-Analysis for Explanation: A Casebook*. New York: Russel Sage.
- Lipsey, M.W., and D.B. Wilson. 1998. Effective Intervention for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Synthesis of Research. In R. Loeber and D.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Lochman, J.E. 1992.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Year Follow-Up and Preventive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3): 426-32.
- Lochman, J.E., J.D. Coie, M.K. Underwood, and R. Terry. 1993. Effectiveness of a Social Relations Intervention Program for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053-1058.
- Loeber, R. and M. Stouthamer-Loeber.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Vol 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eber, R. and M. LeBlank.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Vol 1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sueda, R.L. and K. Anderson. 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36: 269-308.
- McKay, S. 1993.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e Potential of Recreation in Delinquency Prevention. *Trends* 30: 27-30.
- Moffitt, T.E. 1990a.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 Deficit Disorder. *Child Development* 61: 893-910.
- Moffitt, T.E. 1990b. The Neuropsychology of Juvenile Delinquency: A Critical Review.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Vol 1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ffitt, T.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O'Donnell, J., J.D. Hawkins, R.F. Catalano, R.D. Abbott, and L.E. Day. 1995. Preventing School Failure, Drug Use, and Delinquency among Low-Income Children: Long-Term Intervention in Elementary School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5: 87-100.
- Palmer, T.B. 1971. California's Community Treatment Project for 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8: 74-92.
- Palmer, T.B., M. Bohnstedt, and R. Lewis. 1978. The Evaluation of Juvenile Diversion Projects. Sacramento, Calif.: California Youth Authority.
- Patterson, G.R. 1982. *Coercive Family Progress*.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R., B.D. DeBaryshe, and E. Ramsey. 1989. A Development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5.
- Patterson, G.R., J.B. Reid, T.J. Dishion.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nnell, S. 1989. Gurdian Angels: A Unique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Delinquency* 35: 378-400.
- Peterson, R.D., L.J. Kribo, and M.A. Harris. 2000. Disadvantage and Neighborhood Violent Crime: Do Local Institutions Matt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7: 31-63.

- Randall, J., C.C. Swenson, and S.W. Henggeler. 1999. Neighborhood Solutions for Neighborhood Problems: An Empirically Based Violence Prevention Collaboration.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6: 806-20.
- Reppucci, N.D., J.L. Woolard, and C.S. Fried. 1999. Social, Community,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87-418.
- Roehl, J.A., R. Huitt, M.A. Wycoff, A.M. Pate, D.J. Rebovich, and K.R. Coyle. 1996. National Process Evaluation of the Weed and Seed Initiativ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oncek, D.W. and P.A. Meier. 1991. Bars, Blocks, and Crime Revisited: Linking the Theory of Routine Activities to the Empiricism of Hot Spots. *Criminology* 29: 725-53.
- Rosenbaum, D.P. 1988. Community Crime Prevention: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Justice Quarterly* 5: 323-95.
- Rosenbaum, D.P., A.J. Lurigio, and R.C. Davis. 1998. *The Prevention of Crime: Social and Situational Strategies*. West: Wadsworth.
- Rosenbaum, D.P., R.L. Flewelling, S.L. Bailey, C.L. Ringwalt, and D.L. Wilkinson. 1994. Cops in the Classroom: A Longitudinal Evaluation of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DA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3-31.
- Ross, R.R., E.A. Fabino, and C.D. Ewles. 1988. Resoning and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2: 29-35.
- Rush, J.P. 1996. The Police Role in Dealing with Gangs. In J.M. Miller and J.P. Rush(Eds.), *Gangs: A Criminal Justice Approach*. Cincinnati, OH: Anderson.
- Sampson, A., P. Stubbs, D. Smith, G. Pearson, and H. Blagg. 1988. Crime Localities and the Multi-agency Approach.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8: 478-93.
- Sampson, R.J., and J.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J. and W.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atterfield, J.H., B.T. Satterfield, and A.M. Schell. 1987. Therapeutic Intervention to Prevent Delinquency in Hyperactive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56-64.
- Schlossman, S. and M. Sedlak. 1983. The Chicago Area Project revisited. *Crime and Delinquency* 29: 398-462.
- Schultz, L.E., J.L. Crompton, and P.A. Witt. 1995. A National Profile of the Status of Public Recreation Services for at-risk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3: 1-25.
- Schwartz, I.M., S. Guo, and J.J. Kerbs. 1993. The Impa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Public Opinion Regarding Juvenile Justic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rime and Delinquency* 39: 5-28.
- Schweinhart, L.J., H.V. Barnes, and D.P. Weikart. 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Shadish, W.R., Jr. 1992. Do Family and Marital Psychotherapies Change What People Do? A Meta-Analysis of Behavioral Outcomes. In T.D. Cook, H. Cooper, D.S. Cordray, H. Hartmann, L.V. Hedges, R.J. Light, T.A. Louis, and F. Mosteller(Eds.), *Meta-Analysis for Explanation: A Casebook*.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haw, C. and McKay.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man, L.W. 1997. Communities and Crime Prevention. In L.W. Sherman(Eds.),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Sherman, L.W., P.R. Gartin, and M.E. Buerger. 1989. Hot Spots of Predatory Crime. *Criminology* 27: 27-55.

- Skogan, W. 1990. *Disorder and Decline*. New York: Free Press.
- Skolnick, J.H. and D.H. Bayley. 1988. *Community Policing*.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licker, E.K., and D.J. Palmer. 1993. Mentoring At-Risk High School Students: Evaluation of a School-Based Program. *School Counselor* 40: 327-334.
- Smith, C.A. and S.B. Stern.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 382-420.
- Smith, C. and T.P. Thornberry.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 451-77.
- Spergel, I. 1989. *Youth Gangs: Problems and Response*.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hicago.
- Spergel, I.A., and S.F. Grossman. 1997. The Little Vilage Project: A Community Approach to the Gang Problem. *Social Work* 42: 456-470.
- Spergel, I.A. 1995. *The Youth Gang Problem: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pivack, G., and M.B. Shure. 1982. The Cognition of Social Adjustment: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Thinking. In B.B. Lahey and A.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5.). New York: Plenum.
- Strayhorn, J.M., and C.S. Weidman. 1991. Follow-Up One Year after Parent-Child Interaction Training: Effects of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138-143.
- Taylor, R.B. 1996. Neighborhood Responses to Disorder and Local Attachments: the Systemic Model of Attachment, Social Disorganization, and Neighborhood Use Value. *Social Forces* 11: 41-74.
- Taylor, R.B. and S. Gottfredson. 1986. Environmental Design, Crime, and

- Prevention: An Examination of Community Dynamics In A.J. Reiss and M. Tonry(Eds.), *Communities and Cr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pson, D.W., and L.A. Jason. 1988. Street Gangs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5: 323-333.
- Thornberry, T.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91.
- Thurman, Q.C., A. Giacomazzi, and P. Bogen. 1993. Research Note: Cops, Kids, and Community Policing. *Crime and Delinquency* 39: 554-64.
- Thurman, Q.C., A.L. Giacomazzi, M.D. Reisig, and D.G. Mueller. 1996. Community-based Ga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rime and Delinquency* 42: 279-95.
- Tierney, J.P., J.B. Grossman, and N.L. Resch. 1995. *Making a Difference: An Impact Study of Big Brothers/Big Sisters*. Philadelphia: Public/Private Ventures.
- Tolan, P.H., and N.G. Guerra. 1994. *What Works in Reducing Adolescent Violence: An Empirical Review of the Field*. Boulder, CO: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University of Colorado.
- Tremblay, R.E., and W.M. Craig. 1995. Developmental Crime Prevention. In M. Tonry and D.P. Farrington(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Vol. 19. Building a Safer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emblay, R.E., B. Masse, D. Perron, M. Le Blanc, A.E. Schwartzman, and J.E. Ledingham. 1992. Early Disruptive Behavior, Poor School Achievement, Delinquent Behavior, and Delinquent Personality: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64-72.
- Tremblay, R.E., L. Pagani-Kurtz, L.C. Masse, F. Vitaro, and R.O. Pihl. 1995. A Bimodal Preventive Intervention for Disruptive Kindergarten Boys: Its Impact through Mid-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60-568.

- Tremblay, R.E., F. Vitaro, L. Bertrand, M. Le Blanc, H. Beauchesne, H. Boileau, and H. David. 1992. Parent and Child Training to Prevent Early Onset of Delinquency: The Montreal Longitudinal-Experimental Study. In J. McCord and R. E. Tremblay(Eds.),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Interventions from Birth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Guilford.
- Trojanowicz, R. and B. Bucqueroux. 1989.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Anderson Publishing Company.
- Walsh, M.E., M.M. Brabeck, and K.A. Howard. 1999.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in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and Practice 2: 183-208.
- Ward, C.M. 1997. Community Crime Prevention: Addressing Background and Foreground Causes of Crimin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5: 1-18.
- Warner, B.D. and P. W. Rountree. 1997. Local Social Ties in a Community and Crime Model: Questioning the Systemic Nature of Informal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44(4): 520-36.
- Webster-Stratton, C. 1998. Preventing Conduct Problems in Head Start Children: Strengthening Parenting Competenc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93-109.
- Weissberg, R.P., and M.T. Greenberg. 1997. School and Community Competence-Enhancement and Prevention Programs. In I.E. Sigel and K.A. Renning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hild Psychology in practice*(5th ed.). New York: John Wiley.
- Weisz, J.R., G.R. Donenberg, S.S. Han, and D. Kauneckis. 1995.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Outcomes in Experiments vs Clinics: Why the Dispar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83-106.
- Weisz, J.R., B. Weiss, M.D. Alicke, and M.L. Klotz. 1987.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for Clinici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542-549.
- Wells, L.E. and J.H. Rankin.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 Criminology 26: 263-87.
- White, H.R., E.W. LaBouvie and M.E. Bates.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Seeking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 Wiatrowski, M., S. Hansell, C. Massey, and D. Wilson. 1982. Curriculum Tracking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51-60.
- Widom, C.S. 1989. Child Abuse, Neglect, and Viol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27:251-71.
- Wiebush, R.G., D. Wagner, R. Prestine, and S. VanGheem. 1993. Oklahoma Office of Juvenile Justice 1992 Workload Study: Final Report. Madison, WI: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Wilson, J.Q. and G. Kelling. 1982. Broken Windows. *Athlantic Monthly* 211: 29-38.